관리번호	16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9. 2.

보건복지부

매뉴얼 작성지침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을 근거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감염병 종류,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 매뉴얼 제 · 개정 현황 】

승인 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담당부서
2010.8.31.	• 위기경보 대상 질병을 해외 재출현 전염병까지 확대 관리토록 조정 • 경계→심각, 심각→경계 단계 조절시 대통령실과 행안부와 사전 협의 • 유관기관의 역할 신설 및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을 심각단계로 조정(종전 주의단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일제정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1304 (2010.6.14.)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2011.4.18.	• 법령 개정 등에 따라'전염병'을'감염병'으로 일괄 수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위기경보 단계별 홍보활동 매뉴얼 추가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정비요청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260 (2011.2.10.)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2012.2.13.	• 위기유형별 기관의 임무·역할 수정 및 보완(행정안전부, 식약청 등)	2011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개선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3255 (2011.12.16.)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2012.12.20.	• 정부의 대응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임무·역할 정비 • 제·개정 목록 현황 작성 등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일제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2696 (2012.11.16.)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2013.4.1.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정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매뉴얼 변경 재난역량지원과-13 (2013.3.27.)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2013.10.18.	• 위기관리 단계별 정부기관의 역할 수정 • 위기단계별 주요 조치 신설 • 감염병 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부록신설 •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주요 사항 부록신설	매뉴얼 검토 결과 국가기반보호과-774 (2013.6.26.)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승인 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담당부서
2014.6.27.	• 위기유형 개정 • 위기경보 발령 기준 개정(심각단계) • 유관기관 확대 및 임무·역할 정비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등에 따른 표준매뉴얼 현행화 통보 재난역량지원과-204 (2014.1.2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4.12.18.	• 정부조직 개편(2014.11.19.)에 따른 현행화(기관명칭, 전화번호 등)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 참석 요청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70 (2014.12.4.)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5.11.	•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매뉴얼 개정	국무총리 지시사항 후속조치 통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4140(2015.9.1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6.5.	•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매뉴얼 개정 • 위기 경보 발령 기준 개정 • 질병관리본부 직제 개편에 따른 현행화 • 유관기관별 임무, 역할 보완 및 개정 등	감염병 표준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결과 및 검토의견 송부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928(2016.03.18.)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7.12.	• 위기경보 발령 기준 개정 • 매뉴얼 적용 감염병 범위 확대 • 위기관리체계도 현행화 • 정부대응체계 정비·보안 • 위기평가회의 구성·운영 변경 - 직제개편 등에 따라 의장 및 위원 구성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19.2.	•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관리제도 개선 반영 • 위기징후감시 반영 등 • 실무매뉴얼 작성 기관 추가(고용노동부, 병무청)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목 차 -

Ⅰ. 일반 사항

1. 목적 ····· 3
2. 적용 범위 ····· 3
3. 관련 법규 ····· 4
4. 용어 정의 ····· 5

Ⅱ. 재난 유형과 관리체계

1. 위기 유형 ····· 9
2. 전개 양상 ····· 9
3. 위기관리 체계 ····· 10
   가. 종합체계도 ····· 10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11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 13
   라. 중앙방역대책본부 ····· 14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표 ····· 17
2. 방침 ····· 17
3. 위기징후 감시 ····· 18
   가. 위기징후 목록 ····· 18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9
4. 위기평가 ····· 19
   가. 근거 ····· 19
   나. 위기평가회의 시행 ····· 19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21
가. 위기경보 수준 ····· 21
나. 위기경보 발령·해소 절차 ····· 22
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 23
6. 비상근무체계 ····· 25
가. 구성원별 임무(중앙사고수습본부) ····· 25
나. 구성원별 임무(중앙방역대책본부) ····· 26

Ⅳ.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활동

1. 예방 단계(위기 발생 이전) ····· 29
가. 중점 추진사항 ····· 29
나. 세부 활동내용 ····· 29
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 ····· 30
2. 대비 단계(위기 임박 단계) ····· 35
가. 중점 추진사항 ····· 35
나. 세부 활동내용 ····· 35
다.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별 임무와 역할 ····· 36
관심 단계 (Blue) ····· 36
3. 대응 단계(위기 발생 및 지속 단계) ····· 42
가. 중점 추진사항 ····· 42
나. 세부 활동내용 ····· 42

다.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별 임무와 역할 ····· 43
주의 단계 (Yellow) ····· 43
경계 단계 (Orange) ····· 50
심각 단계 (Red) ····· 58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65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67
4. 복구 단계(위기발생 이후단계) ····· 69
가. 중점 추진사항 ····· 69
나. 세부 활동내용 ····· 69
다. 기관의 임무와 역할 ····· 69

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1.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 75
가. 즉시 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 준비사항 ····· 7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위한 조치목록별 사전 점검사항 ··· 76
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할 ····· 77
2.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 78
가. 즉시 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 준비사항 ····· 78
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위한 조치목록별 사전 점검사항 ··· 79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 ····· 80

Ⅵ. 기관대응수칙

1. 국가재난대응 체계도 및 절차도 ····· 83
2.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 ····· 84
3. 감염병 대응 주요 협업기능 ····· 85
4.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 86
5. 비상연락망 ····· 87

Ⅶ. 부록

1. 사례 ····· 91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93
3.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103
4.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105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상황 전달체계 ····· 119
6.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120
7. 국민행동요령 ····· 121
8. 감염병 위기 시의 주요 표준운영절차 ····· 129
9. 지역방역대책반 체계도 ····· 133

Ⅰ. 일반 사항

Ⅰ. 일반 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가. 감염병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 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하며 보건복지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수행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다음의 상황에 적용

(1)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2)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3)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내 상시발생 감염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로 유행하여 전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한 경우 등

3. 관련 법규

가.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나. 관련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검역법

(5) 의료법

다. 관련 규정 및 지침

(1) 메르스 대응지침

(2) 사스(SARS) 관리지침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4)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5) 2009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

(6)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

(7)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침

(8)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

(9)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교육부)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행정안전부)

(11)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4.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비상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결과수습형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진행형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증폭형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 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경보 수준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재난관리 단계	①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용 어	정 의
감염	감염병의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함
신종·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과거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생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기간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검역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수단으로 공항,항만, 육로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격리·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
방역물자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장비 등 모든 물품을 통칭함
제한적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의료기관, 학교, 직장, 집단 시설 등) 위주로 역학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지역사회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을 넘어 역학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전국적 확산	전파 양상이 전국적이며 역학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방역 대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II. 재난 유형과 관리체계

Ⅱ. 재난 유형과 관리체계

1. 위기 유형

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

다.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개 양상

위기징후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 그 외 위기평가회의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의 발생

↓

위기상황 전개

◈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및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확산
◈ 그외 위기평가회의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의 확산

↓ ↓

국가위기로 발전

◈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증가
◈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

해소

◈ 환자 및 사망자 감소
◈ 추가 전파 차단
◈ 유행 종식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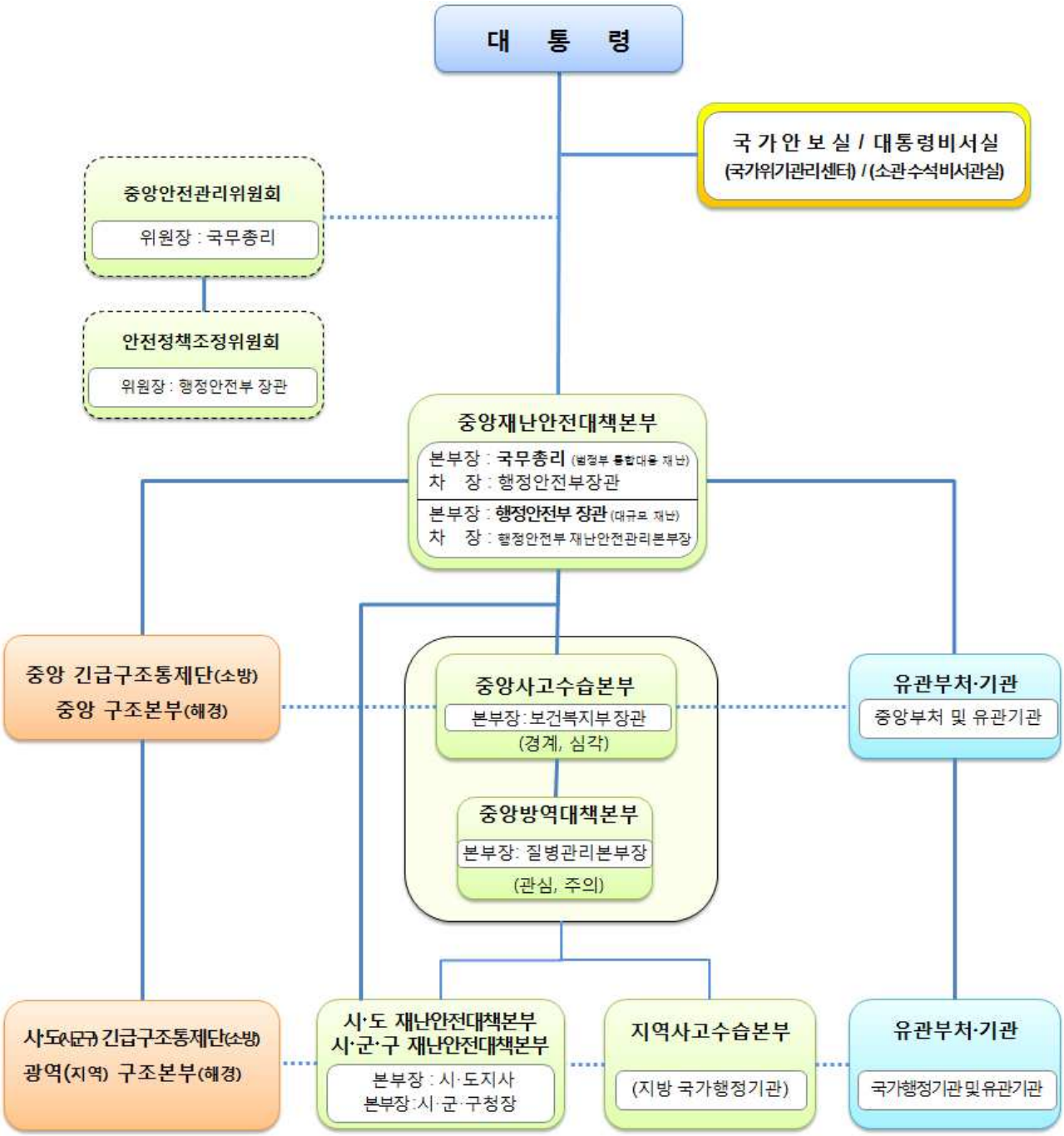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역 할
국 가 안 보 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 통 령 비 서 실 (소관비서관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 앙 안 전 관 리 위 원 회 (국 무 총 리)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감염병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어린이, 외국인 등)에 대한 계획 포함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지 역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재난 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단체장) ○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질서유지, 의료·교통, 구급 및 언론대응 등 * 감염병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어린이, 외국인 등) 지원대책 포함 ○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구 분	역 할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장관)	. ○ 감염병 위기 상황 총괄 ○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사고수습 종합상황 총괄·조정 및 언론 대응 ○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황 전파 ○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리 ○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감염병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어린이, 외국인 등)에 대한 계획 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원 ○ 수습지원단 파견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방역조치 총괄 ○ 긴급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 감염병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 보고 ○ 자체위기평가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 운영 ○ 대응지침 개발·관리 총괄 ○ 감염병 발생 현장 즉각대응팀 운영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입국자 관리 및 진단검사체계 총괄 ○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총괄, 조정 및 지시 ○ 역학조사 수행 및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총괄 ○ 방역물자 지원 및 관리 및 지원 ○ 감염병 위기 정보 수집·전파·공개 ○ 대국민 위기 소통
지역방역대책반 (시·도, 시·군·구)	○ 지역별 방역 대응책 마련·시행 ○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이송 및 관리 ○ 진료병원, 격리병상 및 방역물자 관리 ○ 안전취약계층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의 격리 시 지원책 마련 ○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 홍보
중앙수습지원단	○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 권고 또는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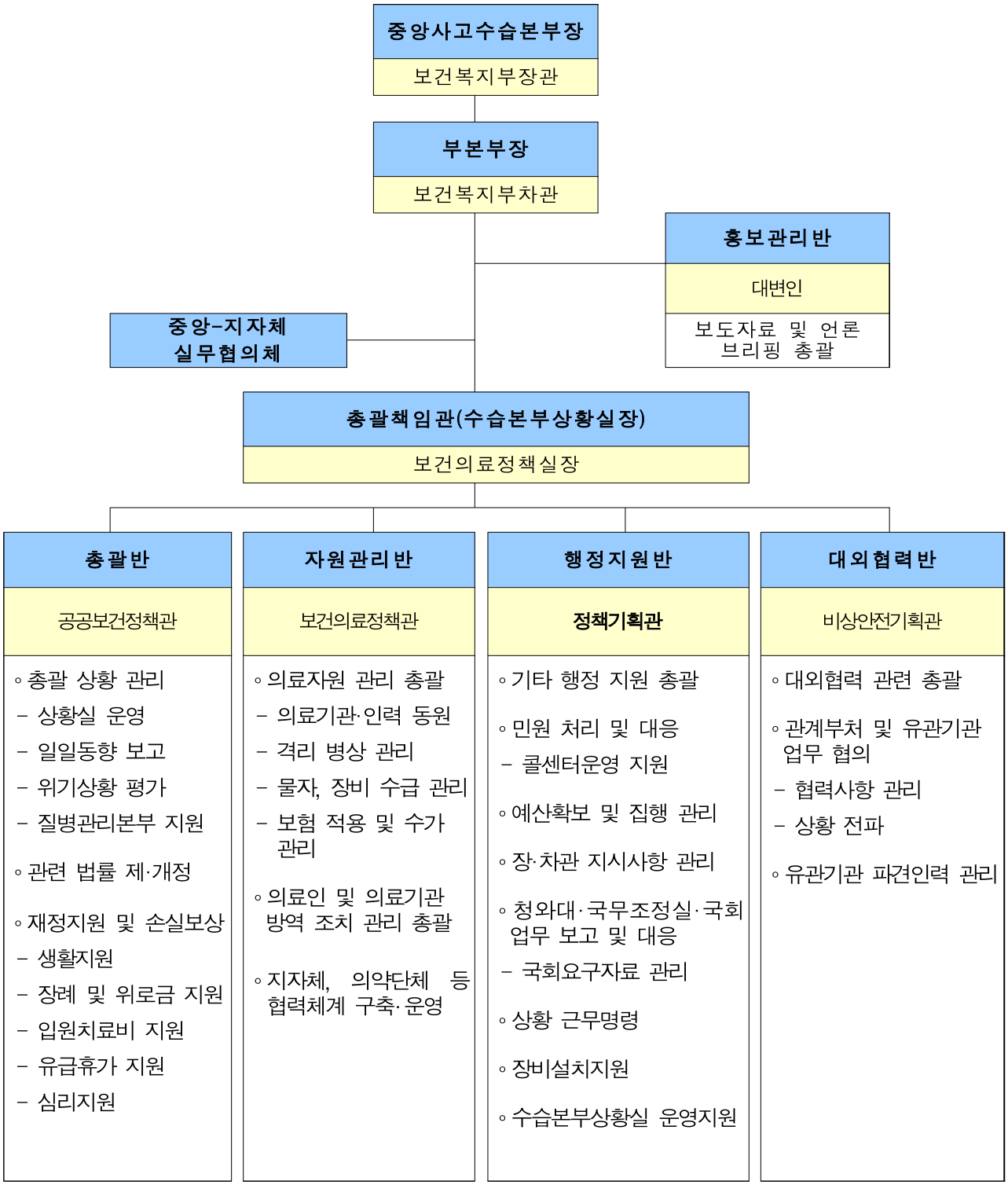

* 단,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가능

라. 중앙방역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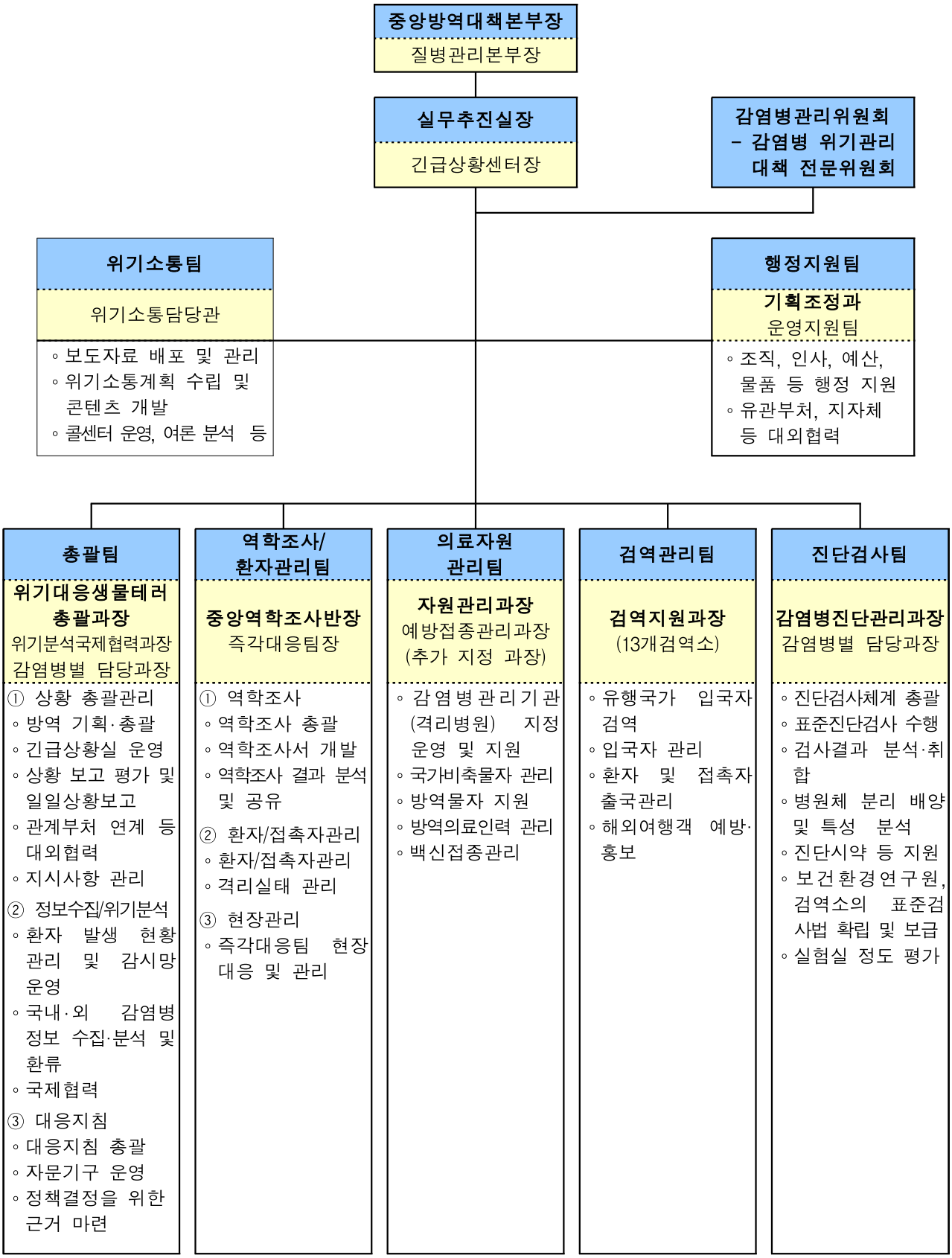

*** 단,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가.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

나.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다. 위기경보 단계별로 언론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여 대국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 도모

2. 방 침

가.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1) 평시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공항·항만을 통한 입국자 검역 강화

(2) 격리병상과 방역물자(예방·치료제, 개인보호구 등)를 확보하고, 방역요원 부족에 대비한 대체인력 동원 계획 마련

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1) 재난 발생 초기에 상황 파악, 보고·전파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지휘체계 일원화

(2)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방역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 역량 총동원

다.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1) 신속·정확한 상황 파악 및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 확보

(2)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국민 동요 및 심리적 공황 방지

3.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형태 (2)	위기징후 (6개)	감시수단 (4개)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대비・대응)
1.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감염병 *원인미상의 감염병	1.1. 주변국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인접국가 또는 교류가 활발한 국가 등 1.2. 겨울 철새 이동 유입 *예: 조류인플루엔자 1.3.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 발생 또는 유행 확산 *모기, 진드기, 동물 등	◦사건기반 감시 *국외 감염병 관련 뉴스 등 ◦지표기반 감시 *전수,표본, 실험실 감시	◦평시 사건 및 지표 기반 감시 지속하며 필요시 감시 강화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등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신고 접수 *긴급상황실, 콜센터(1339)	위기평가 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심각 발령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기경보 발령 및 관련부처·지자체 등에 상황 전파 ◦ 국제기구 (OIE, FAO, WHO) 및 해외 공관 등을 통해 해외 발생 동향 수집 전파, 발생시 현황 등 정보 공유 ◦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대응팀을 현지 파견하고, 긴급상황실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2.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유통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하여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이외에도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2.1. 빈발시기 도래 *태풍, 호우, 기타 요인 등 2.2. 재난지에서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2.3. 기상이변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하여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건기반 감시 *경보/특보 발령, 기상정보, 국내·국외 뉴스 등 ◦지표기반 감시 *전수, 표본, 실험실 감시	◦평시 사건 및 지표 기반 감시 지속하며 빈발시기 도래시 감시강화, 필요시 대책반 운영 *'18년 폭염 대하여 관련 감염병(장염비브리오·비브리오패혈증) 감시·홍보 강화 및 정보 환류 지속	위기평가 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심각 발령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1)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 위기징후 활동 상태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포착 시 징후정보 수집활동 강화

(2) 감시체계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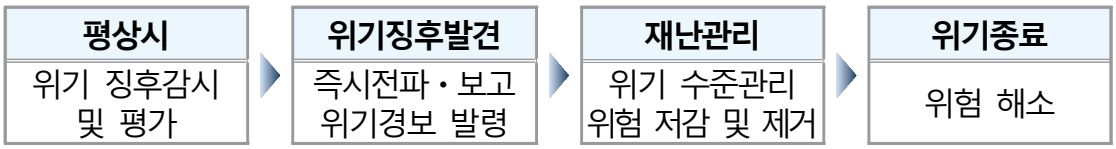

- 질병관리본부는 위기징후의 활동상태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평가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에 전파

- 질병관리본부는 위기징후 감시 결과를 통해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 위기징후 감시 결과는 필요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공유·전파하거나 필요시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

4. 위기평가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1조(위기평가)

나. 위기평가회의 시행

(1) 목적 :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위기경보 발령

(2) 시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한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참석자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의장), 질병관리본부 관련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위기소통담당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및 관련 전문가

* 필요시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자(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추가 소집 등 참석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4) 위기평가회의 방법

-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참석 대상자에 유·무선 통화 또는 영상 등으로 회의 소집

- (장소)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 장소

- (합동 회의)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며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단, 재난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지정된 기관도 회의 참여 가능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영상회의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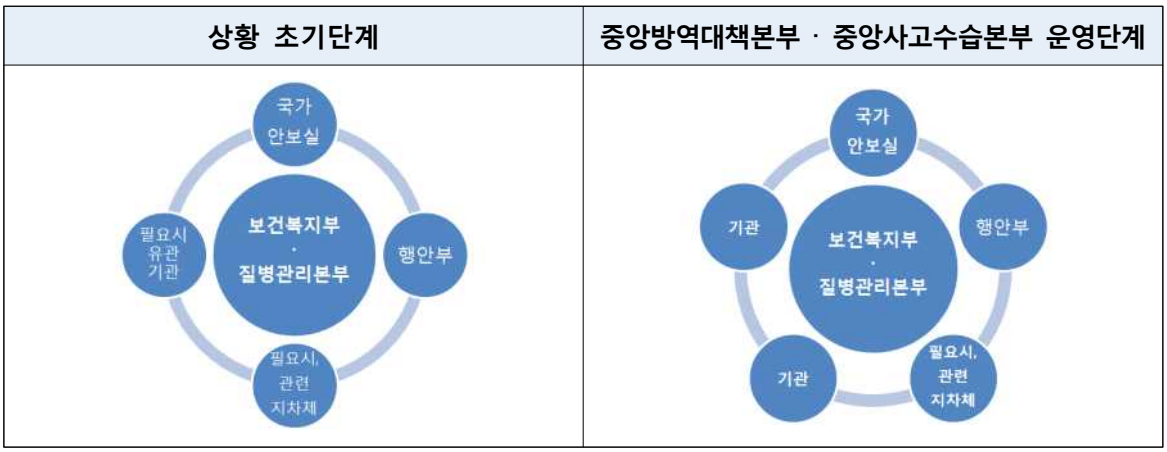

* 영상회의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긴급상황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 장소에서 개최

- (평가기준) 위기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 경보 수준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 위기 경보 발령·해소 절차

(1) 경보 원칙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감염병 재난은 감염병의 종류, 유입 및 발생 상황, 대응 역량 등에 따라 전개 속도나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상황에 따라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또한 관심-주의-경계-심각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상황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 감염병 별 개별 지침에서 동 매뉴얼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한하여 위기경보 발령 기준 변경 가능

- 위기유형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경우 비상단계를 다음과 같이 운영: (관심) 사전 대비단계 -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단계 - (경계)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합동대응단계 - (심각) 범정부 총력 대응단계

(2) 경보 발령 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보건재난대응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고,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 범정부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만, 위급한 상황일 경우 선 조치 후 지체 없이 협의에 착수하여야 함

-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 대외 홍보활동은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위기경보 발령 체계

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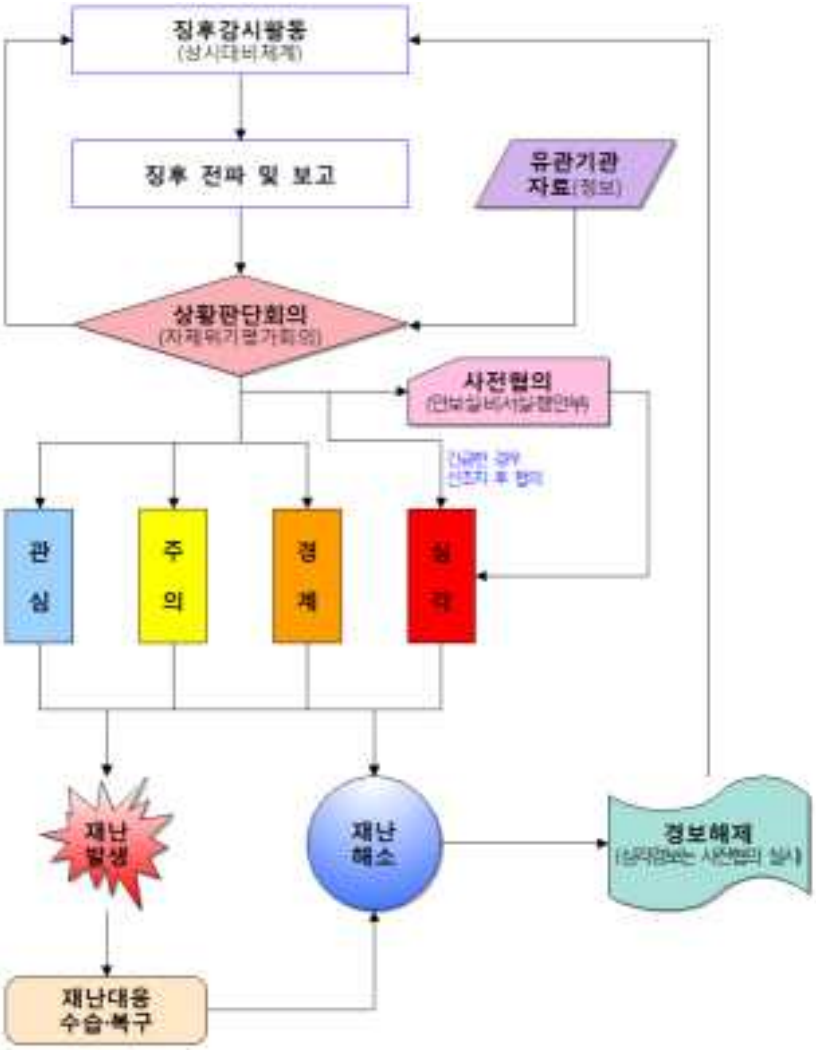

* 심각 단계에서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하도록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6. 비상근무체계

가. 구성원별 임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위기경보 단계 : 경계, 심각	
구 분	**주 요 임 무**
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 총괄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차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 시 직무 대행, 감염병 재난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총괄책임관 (수습본부상황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경계 및 심각 단계 시 실무반 업무 총괄, 본부장 및 부본부장 보좌
총괄반 (공공보건정책관)	▸감염병 재난 발생 및 대응 상황 총괄 관리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자원관리반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 관리 총괄 ▸의료인 및 의료기관 방역 조치 관리 총괄
행정지원반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 총괄 ▸민원처리·대응(콜센터 운영 지원), 예산확보·집행 ▸장·차관 지시사항 관리, 청와대·국조실·국회 업무보고 및 대응 ▸상황근무 명령 및 장비 설치 지원 ▸수습본부상황실 운영 지원
대외협력반 (비상안전기획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파견 인력 관리 등 대외협력관련 총괄
홍보관리반 (대변인)	▸보도자료 및 언론 브리핑 총괄

나. 구성원별 임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위기경보 단계 : 주의, 경계, 심각	
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총괄
실무추진실장 (긴급상황센터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 시 직무 대행,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전반의 총괄
총괄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별 담당과)	▸ 상황 총괄·관리 ▸ 정보수집/위기분석 ▸ 대응지침
역학조사/환자관리팀 (중앙역학조사반, 즉각대응팀)	▸ 역학조사 ▸ 환자/접촉자 관리 ▸ 현장관리
의료자원관리팀 (자원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등)	▸ 감염병관리기관(격리병원) 지정 운영 및 지원 ▸ 국가비축물자 관리 및 방역물자 지원 ▸ 방역의료인력 관리 ▸ 백신접종관리
검역관리팀 (검역지원과, 13개 검역소)	▸ 유행국가 입국자검역 ▸ 입국자 관리, 환자 및 접촉자 출국관리 ▸ 해외여행객 예방·홍보
진단검사팀 (감염병진단관리과, 감염병별 담당과)	▸ 진단검사체계 총괄(표준진단검사 수행, 검사결과 분석·취합, 병원체 분리 배양 및 특성 분석, 진단시약 등 지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역소의 표준검사법 확립 및 보급, 실험실 정도 평가
위기소통팀 (위기소통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및 관리 ▸ 홍보계획 수립 및 자료 개발 ▸ 콜센터 운영, 여론 분석 등
행정지원팀 (기획조정과, 운영지원팀)	▸ 조직, 인사, 예산, 물품 등 행정 지원

Ⅳ.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활동

Ⅳ.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활동

1. 예방단계 (위기발생 이전)

가. 중점 추진사항

◈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유지
◈ 검역 · 해외 발생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염병 유입방지
◈ 징후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한 감염병 재난 발생 조기 발견
◈ 교육·홍보, 예방접종사업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

나. 세부 활동내용

(1)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조직 체계 정비 및 강화

(2)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방역 인프라 구축 및 점검

(4) 감시체계를 통한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 조치

(5) 검역 및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사전 차단

(6) 국내 감염병 발생 원인·규모 파악 및 확산가능성 예측

(7) 국민 및 의료인 등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최소화

(8) 예방접종을 통한 국민 면역력 제고

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① 기관별 임무·역할

기 관	임무 및 역할
보건복지부	○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정비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 유관기관 상호협력·조정 체계 구축 ○ 질병관리본부 활동 지원
질병관리본부	○ 국가방역인프라 구축 및 점검 ○ 감염병 관리 대응 지침 등 개발 및 현행화 ○ 국내외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 및 훈련 ○ 검역 등을 통해 국내유입 사전 차단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및 징후감시체계 운영 ○ 감염병 발생 특이사항 보건복지부 보고 및 유관기관 공유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구축 ○ 필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지역 감염병 대응 조직 정비 ○ 지역 방역 인프라 구축 및 점검 ○ 지역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 지역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운영 ○ 감염병 관련 정보 관할 의료기관 배포 및 점검 ○ 감염병 담당자 임무숙달 교육 및 훈련 실시 ○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운영 ○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할 주민 대상 교육·홍보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총괄 및 집행계획의 승인 ○ 기관간 업무의 협의 조정
행정안전부	○ 매뉴얼 관리・운영 및 점검・개선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시행 ○ 예·경보 시설, 민방위경보시스템 및 재난방송 협조체계 구축 ○ 위기경보 발령문서 접수 및 상황 보고 ○ 위기경보 발령 사항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 통보 ○ 주관기관 상황실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추진
소방청	○ 감염병 환자 이송 수단 점검 및 필요시 가동 지원 ○ 감염병 재난 대책 수립 협력
해양경찰청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구축·점검 ○ 인명 구조·대피계획 수립 ○ 해상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구축·점검 ○ 필요시 감염병 유발 농수산물 수입 현황 등 파악 ○ 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공·항만 국경검역 ○ 필요시 예찰협의회 운영 등 예찰업무 시행
환경부	○ 국외 재난 상황 모니터링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점검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 주요 감염의심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사전 예방조치 실시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

외교부	○ 유관기관 및 해당국가 체류 우리 국민·여행객 등 대상 감염병 정보 및 상황 전파 ○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가동 ○ 관할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구
법무부	○ 재난관리부대 인원・장비 점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주관기관 요청시)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국토교통부	○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교통관련 대체자원 현황 확인
해양수산부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 선박 및 항만시설 관리
문화체육 관광부	○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 다중이용 시설, 문화・체육 행사 등 관리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 ○ 군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허가·생산 현황 파악 및 점검
경찰청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협조 ○ 재난관리부대 인원・장비 점검
병무청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② 주요 조치내용 (주관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사전 차단

□ 국내 유입 사전 차단

○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 해외 여행객 대상 현지 감염병 주의사항 홍보

○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 실시

○ 다부처 협력을 통한 감염원 유입 감시·차단 (농축수산물, 야생동물 등)

□ 예방접종

○ 예방접종을 통한 국민 면역력 제고

□ 교육·홍보

○ 국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감염병 유행 대응역량 강화

□ 정부 대응 조직 체계 정비

○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 체계 정비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응책 수립·점검

○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감염병별 지침 개발·현행화

○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훈련 등 실시

○ 24시간 신종감염병 즉각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역학조사관 등 국가 감염병 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방역물자 비축, 검사·진단장비 및 진단기술 확보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병관리기관, 접촉자 격리시설 등 지정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운영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전파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접수받은 경우, 신속하게 상황 파악 후 동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

○ 현장 확인, 초동 조치 및 필요시 역학 조사 실시

○ 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2. 대비단계 (위기 임박 단계)

가. 중점 추진사항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가동 준비 태세 점검

◈ 유관기관 등과 공조·협력체계 가동 준비

◈ 검역 ·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유입 조기 발견

◈ 필요시 위기평가회의 소집 및 경보 발령·격상 준비

나. 세부 활동내용

(1) 감염병 유행에 대한 정부 대응 조직 체계 정비 및 강화

(2)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관리 및 가동 준비 태세 점검

(3)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 가동 준비

(4) 징후감시 및 검역 등의 강화를 통한 감염병 유입 및 재난 발생 조기 발견

(5) 감염병 위기 상황 악화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위기경보 발령 여부 결정

다.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 및 역할

(1) 관심(Blue)

① 기관별 임무·역할

기 관	임무 및 역할
보건복지부	○ 감염병 재난 관리를 위한 정부 대응조직 및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준비 태세 점검 ○ 유관기관 상호협력·조정 체계 점검 및 필요시 상황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을 대비한 체계 점검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별 대책반 활동 지원 ○ 응급의료지원체계, 비상진료체계, 가용 자원 등 점검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대비한 체계 점검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준비태세 점검 ○ 감염병 관리 대응 지침 등 활용·배포 준비 ○ 국내외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지속 ○ 검역 강화 등을 통해 국내유입 사전 차단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지속 ○ 감염병 발생 특이사항 보건복지부 보고 및 유관기관 공유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가동 점검 ○ 필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보도자료 및 디지털 채널을 통한 감염병 정보 제공
시도 및 시군구	○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대비 체계 점검 및 필요시 운영 ○ 지역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지속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준비 태세 점검 ○ 지역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운영 강화 ○ 지역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대응 및 접촉자 관리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감염병 관련 정보 관할 의료기관 배포 및 점검 ○ 해당 감염병에 대한 담당자 임무숙달 교육 및 훈련 실시 ○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 관할 주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 동향 모니터링, 정부대처방향 검토 ○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계획 승인
행정안전부	○ 매뉴얼 관리・운영 및 점검・개선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시행 ○ 위기경보 발령문서 접수 및 상황 보고 ○ 위기경보 발령 사항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 통보
소방청	○ 감염병 환자 이송 수단 점검 및 필요시 가동 지원 ○ 신고 접수, 상황 전파, 이송・방역지원
해양경찰청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이송체계 구축·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구축·점검 ○ 필요시 감염병 유발 농수산물 수입 현황 등 파악 ○ 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 필요시 예찰협의회 운영 등 예찰업무 시행
환경부	○ 국외 재난 상황 모니터링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점검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 주요 감염의심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사전 예방조치 실시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

외교부	○ 감염병 정보 및 상황 전파(유관기관 및 해당국가 체류 우리 국민·여행객) ○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감염 차단 방법 공지 등) ○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가동 ○ 관할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구
법무부	○ 재난관리부대 인원·장비 점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국토교통부	○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교통관련 대체자원 현황 확인
해양수산부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 선박 및 항만시설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 다중이용 시설, 문화·체육 행사 등 관리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 ○ 군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허가·생산 현황 파악 및 점검
경찰청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협조 ○ 재난관리부대 인원·장비 점검
병무청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파악·보고・전파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접수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감염병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 파악 후 동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

○ 현장 확인, 초동 조치 및 관련 상세정보 수집

○ 관련 해외 발생 동향 파악 등 정보 수집

○ 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위기경보 발령(관심단계)에 따른 대응조치

□ 방역 인프라 점검 및 가동 준비 태세 점검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을 대비한 운영체계 및 연락망 등 점검

○ 검역소, 시·도(시·군·구 보건소) 및 유관기관 비상방역체계 및 비상연락망 점검

○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신종감염병 즉각대응체계 운영

○ 감시, 역학조사, 환자 이송·진료체계 준비 및 점검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접촉자 격리시설, 방역물자 확보 및 점검

○ 감염병 대응지침 준비·현행화 및 유관기관 공유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구축·강화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강화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감염내과 및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감염병 의심사례 모니터링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검역 실시·강화

○ 실험실 진단검사 및 감시체계 운영 및 점검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역학조사 실시,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현장 통제·정리 및 교육

* (예) 발생지역 출입 제한 또는 일시적 폐쇄, 오염물건 폐기, 장소 소독 등

□ 국내·외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동향 보고

○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평가

○ 신종감염병에 대한 최신 지견 및 연구 결과 등 현행화

□ 감염병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투명한 국민소통

○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국민 소통 및 상황 정보 공개

○ 감염병 발생국 재외공관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 콜센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상담원 교육

위기경보 해제

○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심단계 위기경보 해제는 미실시

3. 대응단계 (위기 발생 및 지속단계)

가. 중점 추진사항

◈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가동

◈ 유관기관 등과 공조·협력체계 가동

◈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등 방역활동

◈ 대국민 위기소통

◈ 피해보상 및 지원

나. 세부 활동내용

(1)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정부 및 범정부적 총력 대응

(2)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 조치

(3) 환자·접촉자 관리

(4)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 강화

(5)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및 추가 인력·시설·물자·장비 조달 강구

(6)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7) 신속·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한 위기경보 발령·해제 여부 결정

(8)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다.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 및 역할

(2) 주의(Yellow)

① 기관별 임무·역할

기 관	임무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위기경보 발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 ○ 유관기관 상황 전파 ○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 입원·치료비,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 대국민 소통 및 정보전달 지원
질병관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시도 및 시군구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시·도와 관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운영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접수,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및 전파 - 재난관련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 ○ 유관기관 및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지원 ○ 내국인 접촉자 주소정보 제공 협조 ○ 지자체 접촉자 관리 모니터링 지원
기획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소방청	○ 이송·방역 지원 및 관련 상황정보 전파
해양경찰청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전파 ○ 해상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외교부	○ 감염병 정보 및 상황 전파 (교민·여행객 등) ○ 외국인접촉자 소재파악 등 정보 확인 및 누락정보 제공 ○ 감염추정 국가내 현지 접촉자 정보 확인 ○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검토 ○ 감염병 안전문자 특별발송 협조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지속 ○ 필요시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보건부 협조 요청 ○ 관할 재외국민 보호조치 확인

환경부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적극적 대응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운영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 관리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 수용·보호 시설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산업보건유관단체와 관련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국토교통부	○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해양수산부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계속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 필요시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자제 조치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필요시 휴교 등 검토(휴교 결정 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대책 마련)
국방부	○ 군 의료인력 동원 및 시설지원 ○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생산 및 지원
경찰청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경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소재파악 및 위치정보 제공 협조
병무청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파악·보고・전파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접수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감염병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 파악 후 동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

○ 현장 확인, 초동 조치 및 관련 상세정보 수집

○ 관련 해외 발생 동향 파악 등 정보 수집

○ 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위기징후 평가

○ (위기 상황 최초 접수 시) 위기 징후에 대한 신속위험평가를 통해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필요성 검토

○ (관심단계에서 상향 조정시) 관심단계에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상향 조정시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경보 수준 결정을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 상위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발생 규모, 심각성, 시급성,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전파 가능성, 사회 기능 영향, 파급효과, 국민적 관심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기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대책 본부 설치·운영

○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 경보 발령

○ “주의” 단계 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하고,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 설치·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요청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 상황 공유 및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파견 가능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역학조사반 및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

○ 추정 감염원,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 확진 환자 관리 및 접촉자 격리 또는 증상 감시

○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현장 통제·정리 및 교육

* (예) 발생지역 출입 제한 또는 일시적 폐쇄, 오염물건 폐기, 장소 소독 등

○ 유관부처 합동 대응체계 가동

* 주민등록정보 제공요청, 지자체 접촉자 관리 모니터링 지원(행안부), 환자・밀접 접촉자 출국금지, 출입국 기록 확인, 외국인 연락처·체류지 정보 제공(법무부), 휴대전화 위치추적, CCTV 조회, 격리 협조(경찰청), 외국인 접촉자 소재파악을 위한 정보 확인(외교부),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환경부), 카드 사용내역 조회(금융위) 등

○ 보건소 담당자가 격리 대상자 주소지 파악, 격리 및 모니터링, 격리 거부자 조치 등을 총괄 시행 (지자체·행안부 등과의 협업)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국내 발생상황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 필요시, WHO 등에 상황 전파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발생지역 감염병 환자 및 지역별 의심환자 발생 현황 감시 강화

* 발생지역 중심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센터 등의 특이 사항 지속 확인

○ 해당 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검역 및 입국 후 신고 안내 강화

○ 필요시 의료기관에 해당 감염병 유행국가 입국자 정보 제공

○ 실험실 진단검사 및 감시체계 운영 강화

□ 방역 인프라 가동

○ 검역소 및 시·도(시·군·구 보건소) 등 유관기관 비상방역체계 가동

○ 대응지침 보완(질병관리본부)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 국·공립 및 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 외래 선별진료체계 강화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 감염병 환자 의뢰·이송 체계 강화

○ 접촉자 격리시설, 비축물자 지원 및 수급 관리

○ 가능한 경우 백신접종계획 수립

□ 방역 조치에 따른 지원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치료비,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및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검토

○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 필요시 사망자에 대한 시신 장사방법 제한 및 경비 등 지원

□ 방역지원 및 사회혼란 최소화를 위한 위기소통 강화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정례 운영

○ 보도자료 검토·배포, 취재지원, 오보대응, 현장소통 지원

○ 위기소통 콘텐츠 관리·배포, 정부·민간 기관 소통 협력

○ 위기대응 정보 디지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SNS 등) 직접소통

○ 1339 민원콜센터 상담강화 및 인력·회선 관리

○ 언론 및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전문가·국민소통단 활용 상시 위기소통 자문체계 운영

위기경보 해제

□ 자체위기평가회의 소집 및 경보 해제 발령

○ 경보 하향 조정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후 [주의→관심]으로 하향 조정 시 자체위기평가회의 의장이 질병관리본부장 및 장·차관에게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

(3) 경계(Orange)

① 기관별 임무·역할

기 관	임무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 입원·치료비,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 대국민 위기소통 지원 (질병관리본부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동원 *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 지정, 임시격리소 활용, 집중관리 병원 지정, 민간검사기관·민간의료인, 방역물자 추가 확보 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시도 및 시군구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접수,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및 전파 - 재난관련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 ○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범정부지원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활동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기획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소방청	○ 이송·방역 지원 및 관련 상황 정보 전파
해양경찰청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전파 ○ 해상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외교부	○ 감염병 정보 및 상황 전파 (교민·여행객 등) ○ 외국인접촉자 소재파악 등 정보 확인 및 누락정보 제공 ○ 감염추정 국가내 현지 접촉자 정보 확인 ○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검토 ○ 감염병 안전문자 특별발송 협조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지속 ○ 필요시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보건부 협조 요청 ○ 관할 재외국민 보호조치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 필요시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자제 조치

환경부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적극적 대응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운영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 수용·보호 시설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준비
국토교통부	○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해양수산부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계속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필요시 휴교 등 검토(휴교 결정 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대책 마련)
국방부	○ 군 의료인력 동원 및 시설지원 ○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생산 및 지원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경찰청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경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협조
병무청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일부 중지 검토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파악·보고・전파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접수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감염병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 파악 후 동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

○ 현장 확인, 초동 조치 및 관련 상세정보 수집

○ 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위기징후 평가

○ (위기상황 최초 접수시) 위기 징후에 대한 신속위험평가를 통해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필요성 검토

○ (주의단계에서 상향 조정시) 주의단계에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상향 조정시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경보 수준 결정을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 상위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발생 규모, 심각성, 시급성,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전파 가능성, 사회 기능 영향, 파급효과, 국민적 관심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기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대책 본부 설치·운영**

○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 경보 발령

○ “경계” 단계 경보 발령 시 대응조직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간 소통체계

- (소통주체)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 (소통 횟수·내용) 2회/일, 양 본부의 상황 보고 및 조치사항 공유
- (소통 방법) 서면 공유 또는 필요시 상황공유회의(영상회의 가능) 실시. 단, 상황에 따라 회의 방법 및 횟수 조절 가능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추정 감염원,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심층조사 지속

○ 확진 환자 관리 및 접촉자 격리 또는 증상 감시 강화

○ 유관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현장 통제·정리 및 교육 지속

* (예) 발생지역 출입 제한 또는 일시적 폐쇄, 오염물건 폐기, 장소 소독 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국내 발생상황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 해당 감염병 동향 및 최신 연구 등 필요 정보 점검 및 현행화

□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강화

○ 전국 의료기관 및 응급 의료센터 등의 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 시·도/보건소의 지역별 환자 발생 동향 감시 강화

○ 해당 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검역 실시 및 입국 후 신고 안내 강화

○ 필요시 의료기관에 해당 감염병 유행국가 입국자 정보 지속 제공

○ 실험실 진단검사·감시 체계 강화 및 필요시 민간기관 확대

□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 검역소 및 시·도(시·군·구 보건소) 등 유관기관 비상방역체계 강화

○ 감염병별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지속

○ 의료기관 유행시 집중관리병원 지정 및 관리

○ 병상 확보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 추가 지정

○ 국·공립 및 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 외래 선별진료체계 강화

○ 접촉자 격리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필요시 추가 지정

○ 기관 내 방역업무 중심 기능 개편 및 인력 보강

○ 협력 가능한 민간 의료인 등 전문인력 확인 및 필요시 투입

○ 역학조사반,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운영 강화

○ 비축방역물자 지원 및 추가 확보 체계 점검

○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교육

○ 유관기관, 전문위원회 등 상호협력 체계 운영 강화

□ 방역 조치에 따른 지원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치료비,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및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검토

○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 필요시 사망자에 대한 시신 장사방법 제한 및 경비 등 지원

□ 위기극복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기소통 강화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정례 운영

○ 보도자료 검토·배포, 취재지원, 오보대응, 현장소통 지원

○ 위기소통 콘텐츠 관리·배포, 정부·민간 기관 소통 협력

○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대규모 매체 광고

○ 위기대응 정보 디지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SNS 등) 직접소통

○ 1339 민원콜센터 상담강화 및 인력·회선 관리

○ 언론 및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전문가·국민소통단 활용 상시 위기소통 자문체계 운영

위기경보 해제

□ 자체위기평가회의 소집 및 경보 해제 발령

○ 경보 하향 조정을 위한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후 경계→주의로 하향 조정 시 자체평가회의 의장이 질병관리본부장 및 장·차관에게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

(3) 심각(Red)

① 기관별 임무·역할

기 관	임무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 입원·치료비,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 대국민 위기소통 지원 (질병관리본부로 소통 창구 일원화)
질병관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 국가 방역 인프라 총력 가동 및 추가 가용 자원 확보 -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 지정, 임시격리소 활용, 집중관리병원 지정, 민간검사기관 · 민간의료인, 비축방역물자 추가 확보 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거점병원 기능을 외래진료에서 입원 및 중환자 관리로 전환 등 ○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 필요시 재난문자 발송 요청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강화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 지역 방역 인프라 총 가동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행정안전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실무반 소집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및 건의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중대본부장) ○ 재난사태 선포 여부 검토 및 선포 ○ 지자체 특별교부세 등 지원 검토
기획재정부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소방청	○ 이송·방역 지원 및 관련 상황정보 전파
해양경찰청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전파 ○ 해상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적극적 대응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운영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

외교부	○ 감염병 정보 및 상황 전파 (교민·여행객 등) ○ 외국인접촉자 소재파악 등 정보 확인 및 누락정보 제공 ○ 감염추정 국가내 현지 접촉자 정보 확인 ○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검토 ○ 감염병 안전문자 특별발송 협조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지속 ○ 필요시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보건부 협조 요청 ○ 관할 재외국민 보호조치 확인
법무부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 수용·보호 시설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국토교통부	○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해양수산부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계속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 필요시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자제 조치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필요시 휴교·휴원 등 검토(휴교 결정 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대책 마련)
국방부	○ 군 의료인력 동원 및 시설지원 ○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생산 및 지원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경찰청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경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협조
병무청	○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일부 및 전면 중지 검토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위기상황 파악·보고・전파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접수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감염병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 파악 후 동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보고

○ 현장 확인, 초동 조치 및 관련 상세정보 수집

○ 필요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위기징후 평가

○ (위기 상황 최초 접수시) 위기 징후에 대한 신속위험평가를 통해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필요성 검토

○ (경계단계에서 상향 조정시) 경계단계에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상향 조정시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경보 수준 결정을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 상위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발생 규모, 심각성, 시급성,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전파 가능성, 사회 기능 영향, 파급효과, 국민적 관심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기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대책 본부 설치·운영**

○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 경보 발령

○ “심각” 단계 경보 발령 시 대응조직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강화
-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강화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전국적 유행 확대 시에는 제한된 방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역조치를 집중 필요 현장·시설·지역·대상(고위험군, 중환자 위주 등)로 방역조치 전환 검토

○ 필요시 및 방역 자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 추정 감염원,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심층조사 지속
- 확진 환자 관리 및 접촉자 격리 또는 증상 감시
-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현장 통제·정리 및 교육 지속

○ 유관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국내 발생상황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지속

○ 해당 감염병 동향 및 최신 연구 등 필요 정보 점검 및 현행화

□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강화**

○ 환자 감시체계 및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입원 및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 내성주·변이주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 **환자 조기 치료체계 구축**

○ 항바이러스제 등 가능한 치료제 적극 투약으로 중증화 방지

○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교육

○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

○ 중환자 치료 프로토콜 보급 및 교육(전국적 확산 단계)

□ **모든 방역 인프라 파악 및 동원**

○ 검역소 및 시·도(시·군·구 보건소) 등 유관기관 비상방역체계 강화

○ 거점병원을 외래진료에서 입원환자 및 중환자 관리로 역할 전환 (전국적 확산 단계)

○ 방역요원, 의료인력 추가 동원 및 지속 가능한 운용 대책 마련

○ 국가 방역물자, 병상, 시설 총 가동 및 가용자원 추가 동원

○ 유관기관, 전문위원회 등 상호협력 체계 운영 강화

□ 방역 조치에 따른 지원

○ 입원 및 격리자 등에 대한 치료비, 생활 지원 등의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시 유급휴가비용 지원 검토

○ 필요시 사망자에 대한 시신 장사방법 제한 및 경비 등 지원

□ 위기극복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소통 강화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정례 운영

○ 보도자료 검토·배포, 취재지원, 오보대응, 현장소통 지원

○ 위기소통 콘텐츠 관리·배포, 정부·민간 기관 소통 협력

○ 위기극복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매체 광고

○ 위기대응 정보 디지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SNS 등) 직접소통

○ 1339 민원콜센터 상담강화 및 인력·회선 관리

○ 언론 및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전문가·국민소통단 활용 상시 위기소통 자문체계 운영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구 분	활 동 내 용	책임기관 (연계부처)
①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활동 총괄 및 조정>	
	<평시> ·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감시 · 국가방역인프라 구축 및 점검 <재난 발생시> ·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총괄 ·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⑥ 재난 자원 지원	<방역물자 신속 지원>	
	· 격리 병상, 지정 의료기관 등의 시설 확보 · 역학조사관, 민간전문가 등 필요 인력 확보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확보 · 필요 예산 확보 및 지원 · 필요시 감염환자 및 자가격리자 소재 파악 및 관리 등 행정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등)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감염환자 및 격리대상자 관리>	
	· 국가 감염병대응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조치 강화 · 감염환자 및 격리대상자 조치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 외래 및 입원진료체계 강화 · 감염환자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발생 현장에 대한 방역 및 위생환경 관리>	
	· 감염병 발생 환경 소독·방역 ·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련 폐기물 처리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⑪ 사회질서유지	<전국 방역 및 재난 대응요원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해상질서 유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⑬ 재난수습 홍보	<대상별 예방수칙 홍보 및 위기소통>	
	· 감염병 대응 현황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정보전달 · 학교·학원, 직장·사업장, 수용·보호시설, 해외여행객, 재외국민,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군 인력·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1)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편제

- 재난현장 대응·수습 편제는 공보, 연락, 상황 총괄(대응계획), 현장 대응, 자원 지원, 대민 지원(긴급 복구)으로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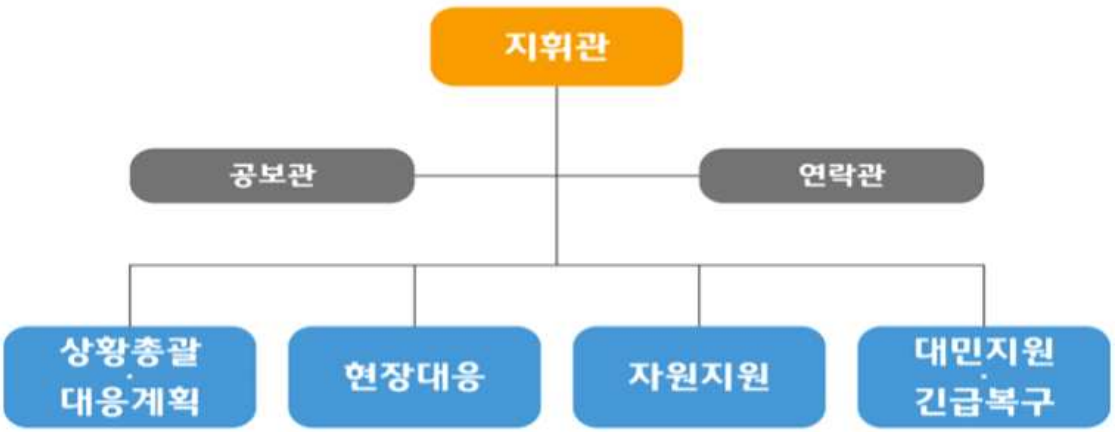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 현장대응

- (긴급구조 상황)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을 통합지원한다.

- (비긴급구조 상황) 각 유형별 소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을 통합지원한다.

○ 수습복구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습·복구 현장을 지휘한다. 소방·해경은 기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고, 군·경·유관기관·협회·단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복구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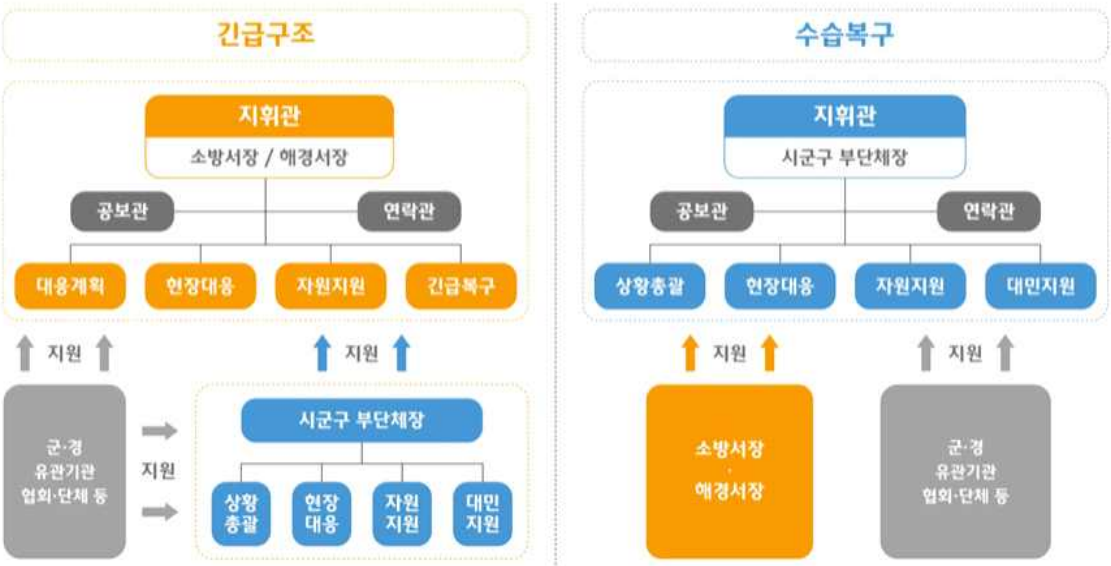

(3)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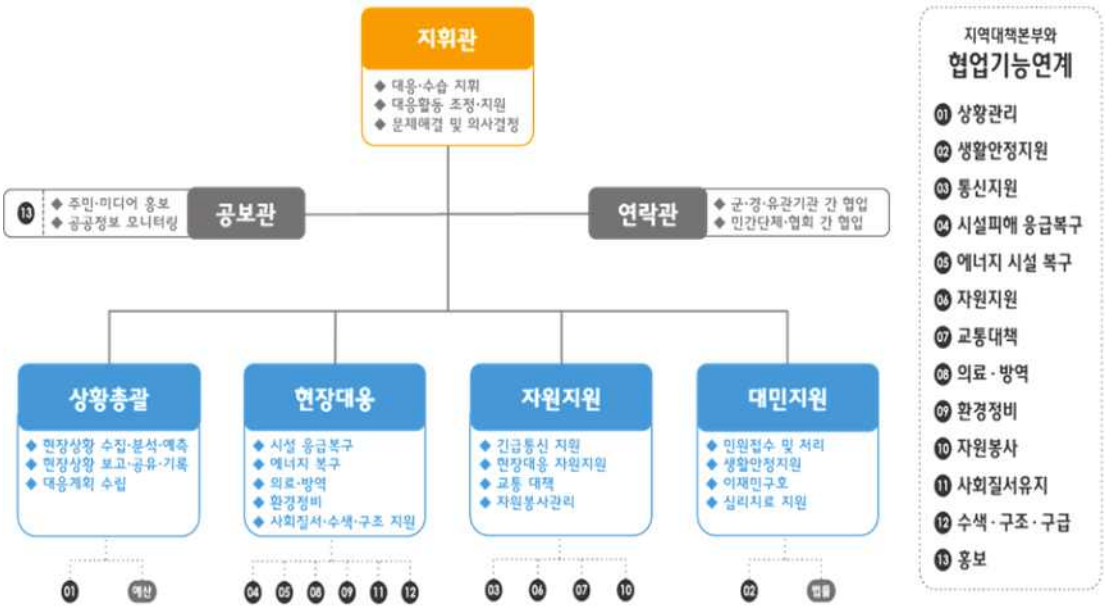

4. 복구 단계 [위기발생 이후 단계]

가. 중점 추진사항

◈ 협조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지원·보상

◈ 감염병 재난 대응 평가 및 대응체계 보완

나. 세부 활동내용

(1) 손실보상,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보상

(2) 감염병 재난 대응에 대한 종합평가

(3) 감염병 유행 사례에 대한 역학적 분석

(4) 감염병 대응 체계 보완 및 제도 개선

다. 기관의 임무 및 역할

①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보건복지부	○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총괄 평가 ○ 국가 방역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강구 ○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 계획 수립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유행 사례에 대한 역학적 분석 ○ 대응 체계 운영, 위기 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 대응 매뉴얼 및 해당 감염병 지침 수정·보완 ○ 국가 방역 인프라 보완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등(해당시) ○ 위기관리 관련기관 협조체계 평가 및 보완
행정안전부	○ 재난 상황 종료에 따른 대응역량 평가 ○ 위기관리체계 조사·분석 및 보완
소방청	○ 감염병 환자 이송 수단 분석 및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가축방역활동 체계 보완 - 감염병 매개가축에 대한 관리 및 대책 강구
환경부	○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관리 체계 보완 - 철새 등 이동성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등 대응책 강구
기획재정부	○ 위기상황 복구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외교부	○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전파 ○ 재외국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 위기복구에 대한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대응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완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피해 보상 및 지원

□ 협조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지원·보상

○ 의료기관, 접촉자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 보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치료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사망자 장례비용 등 지원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 감염병 유행 사례에 대한 역학적 분석

○ 발생 규모, 기간, 원인, 전파 양상, 사망자 등에 대한 역학적 분석

○ 필요시 추가 연구 수행

□ 대응 조치에 대한 종합 평가

○ 감염병 위기 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 사례 및 규모 파악

○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

○ 유관 기관 간 협조체계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 국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 평가

대응체계 보완

□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체계 보완

○ 정부 대응 체계 보완

○ 대응 매뉴얼 및 해당 감염병 지침 수정·보완

○ 국가 방역 인프라 보강

○ 법·제도 개선 및 필요 예산 확보

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즉시 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즉시 가동 및 본부장 역할

1. 중앙방역대책본부

가. 가동을 위한 단계별 사전 준비사항

(1) 관심(Blue) 단계

○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운영 및 위기분석·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준비 및 가동 훈련
○ 병상·시설·물자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감염병 대응지침 수립·보완 및 방역요원 교육 훈련
○ 보도초안 마련, 홈페이지, 콜센터 등 국민소통 채널 점검

(2) 주의(Yellow) 단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위기상황 지속 모니터링·평가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조치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 방역 인프라 가동
○ 언론 등 초기정보 공개 강화, 사회혼란 최소화를 위한 위기소통

(3) 경계(Orange) 단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속 운영
○ 역학조사, 현장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강화
○ 방역 인프라 추가 확보 등 가동 강화
○ 위기극복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언론·국민·디지털 소통 강화

(4) 심각(Red) 단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속 운영
○ 환자 조기 치료체계 구축 및 모든 방역 인프라 파악 및 동원
○ 위기극복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소통 지속강화

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위한 조치목록별 사전 점검사항

순번	조치목록	세부내용
1	상황실 운영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평가 ○ 상황 전파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수시 상황 전파
2	위기대응체계 구축	○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준비 및 가동 훈련 ○ 병상·시설·물자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감염병 대응지침 수립·보완 및 방역요원 교육 훈련 ○ 시도, 보건소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점검
3	재난(사고)발생상황 보고·전파	○ 감염병 위기징후 발생 시 신속히 상황 파악 및 보고 ○ 필요시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지자체 등에 상황 전파
4	초동대응	○ 현장 확인, 초동 조치 및 관련 상세정보 수집 ○ 중앙역학조사반 현장 파견
5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수준 결정 및 대응책 마련 * 심각경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6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조치 ○ 방역 인프라 가동, 상황 관리 및 추가 확보 ○ 감염병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정확한 정보 공개
7	재난상황 위기소통팀 가동	○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투명·정확한 정보공개 ○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지원 ○ 위기대응 콘텐츠 부처협력 확산 및 여론 모니터링 ○ 민원소통 강화 및 디지털 활용 국민 직접소통 추진

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할 : 감염병 위기 방역조치 총괄

(1) 예방 및 대비단계

○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가동 준비
- 국내·외 감염병 위기분석·평가를 토대로 대책반 운영 등 대응방향 지시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지침 점검 및 정비 지시
- 방역요원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상황 확인
- 병상·시설·물자, 검사진단장비 및 진단기술 준비 상황 확인
- 감염병 예방 대국민·의료기관 소통 지시
- 즉각대응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준비상황 확인

(2) 대응단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총괄
- 상황 보고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 확인, 방역대책 지휘
- 긴급상황실 확대 운영,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 지시
- 각 팀별 조치상황 확인 및 조정
- 유관기관 연계 등 대외 협력 채널 가동 확인
- 지자체 대책본부 등 현장 지원 필요사항 확인 및 대응 지시
-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공개, 언론·유관기관·국민소통 강화 지시
- 방역 인프라 추가 확보대책 마련 지시

(3) 복구단계

○ 감염병 유행사례 분석 및 대응조치 평가 총괄
○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체계 보완 총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을 위한 준비사항

(1) 관심(Blue) 단계

○ 정부 대응조직 및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준비 태세 점검

○ 유관기관 상호협력·조정 체계 점검 및 필요시 상황 전파

○ 응급의료지원체계, 비상진료체계, 가용 자원 등 점검

(2) 주의(Yellow) 단계

○ 위기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

○ 입원·치료비,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마련

(3) 경계(Orange) 단계

○ 위기경보 발령·유관기관 상황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 재난 대응 및 관련 부처 간 협의체계 가동

○ 입원·치료비,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마련

○ 필요시, 범정부지원본부 운영 협조요청

(4) 심각(Red) 단계

○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강화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확보 및 동원 확대

-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나. 중수본 가동을 위한 조치목록별 사전 점검사항

순번	조치목록	세부내용
1	초동대응	○ 시도 및 시군구,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 특별행정기관의 초동조치/ 자력 초동조치
2	초기대응태세 확립 (중앙부처 및 지자체)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출입통제(경찰), 국민행동요령 배포, 비상근무, 임시숙소 지원 등
3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행정부처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 관련 중앙부처(실무매뉴얼 관리부서)공무원 상황실로 파견요청 ○ 초동대응 및 사고수습
4	상황실 가동	○ 비상근무자 편성, 근무요령 교육 ○ 상황 전파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수시 상황 전파 ○ 재난대응에 필요한 장비·물자 확인
5	재난(사고)발생상황 보고·전파	○ 인적재난(사고)발생 시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관계 종합 행정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에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전파(서면, 전화)
6	자체위기평가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대책 마련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7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수습 협조요청 ○ 소속공무원 중대본 파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전 검토 ○ 재난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8	재난상황 언론홍보·대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부·처 대변인실)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9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재난정보 자료 파악	○ 사고발생 대응 시 협조 할 유관기관(중앙·지자체·산하기관 등)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점검 ○ 과거 유사사례 재난발생 정보자료 파악 등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 : 감염병 위기관리 및 사고수습 총괄

□ 예방 및 대비단계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및 정비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감염병 관련 법령·법규 제·개정
○ 감염병 유행 정부 대응조직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을 대비한 체계 점검

□ 대응단계

○ 감염병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총괄
- 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
- 중앙사고수습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점검 및 대책 지시
- 소속 공무원 연락관 파견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관리
○ 대국민 소통 및 정보전달

□ 복구단계

○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총괄 평가
○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워 계획 수립
○ 감염병 발생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Ⅵ.기관대응수칙

유형 : 감염병 재난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리번호 : 사회재난-16

관련 매뉴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보건복지부	○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1. 국가재난대응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감염병 재난 대응 표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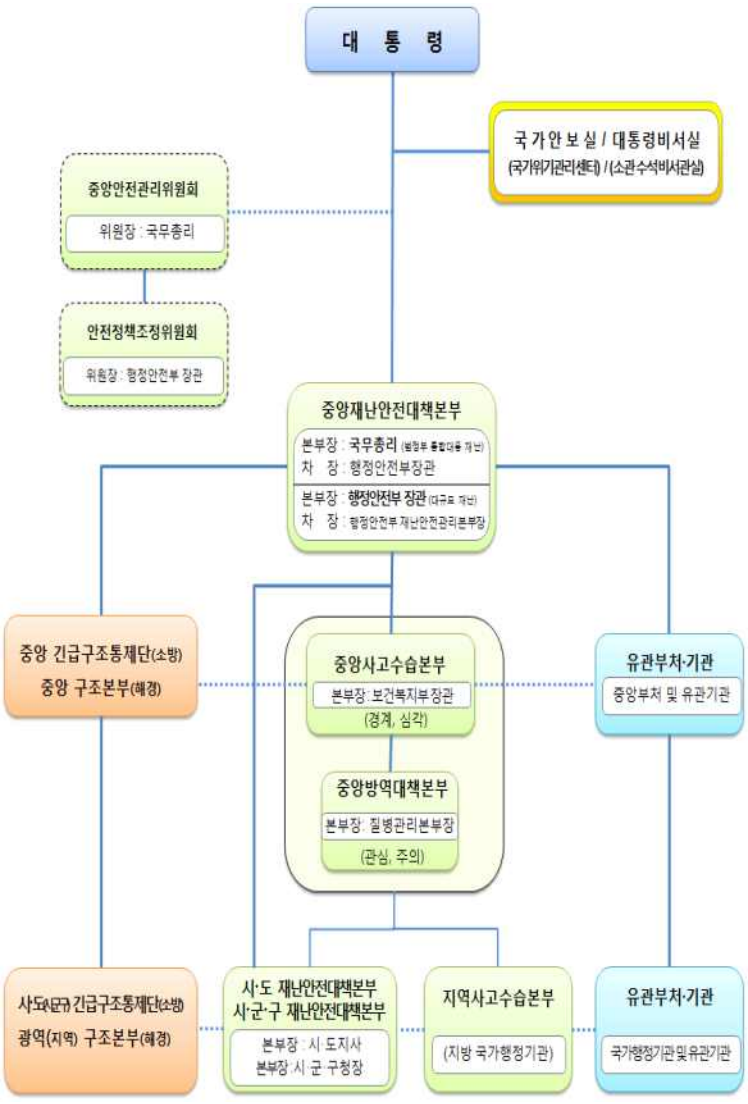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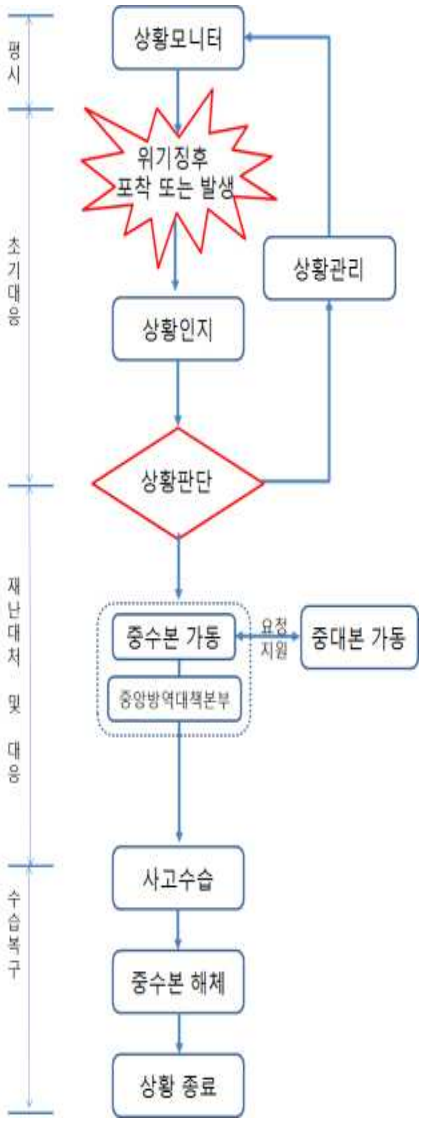

2.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수습 · 복구 단계
		질환별 대책반 (질병관리본부)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운영 필요시, 대응지원단(보건복지부)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지속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운영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대응부서	상황실	**상황 모니터링** • **국내외 발생 상황 모니터링** -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유입 가능성 예측 - (국내감염병) 원인·규모 파악 및 확산가능성 예측	**상황 접수** • **초기상황 파악** - 감염원인 역학조사, 현장조치 등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 환자발생 확대가능성 여부 및 조치사항 등 파악 **상황 전파** • **장·차관, 실·국장, 본부장 등 재난소관부서 전파** • 필요시 BH, 총리실 등 유관기관 전파	• **추가 발생 현황 파악**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응 상황 파악**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환자 발생 확대 상황 질병관리본부장 및 장·차관 보고**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브리핑**	• **협조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지원·보상** –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환자, 격리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 지원 • **감염병 유행 사례에 대한 역학적 분석** •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에 대한 종합 평가** – 피해 사례 및 규모 파악 – 대응 및 협조체계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체계 보완** – 대응체계, 매뉴얼 등 수정·보완 – 국가 방역 인프라 보완
	소관부서	**자체위기평가회의** • **감염병 발생 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수준 판단**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점검 • 감염병 대응 지침 점검 • 위기징후 모니터링 • 필요시(국내감염병등의 경우) 현장 확인, 초동조치 및 역학조사 실시	**자체위기평가회의** • **감염병 발생 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수준 판단**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발생 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본부장 및 장차관) • **국가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반 및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 -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및 실험실 진단체계 가동 - 병상, 시설, 방역물자 지원 및 수급관리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 브리핑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지시사항 이행**	• **상황실 정보 인수 및 추가 상황 파악**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운영 강화** -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감시체계 및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24시간 비상 방역체계 등) -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병상, 시설, 방역물자 보강 검토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강화 - 대국민 위기 소통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 **상황실 정보 인수 및 추가 상황 파악**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운영 강화**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운영 강화** - 국가 감염병 대응태세 및 인프라·가용자원 총력 동원 - 환자 조기 치료체계 구축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강화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지시사항 이행** • **VIP 상황실 방문 시 브리핑 자료 작성**	
장·차관 (본부장)		**조치사항 지시** •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현장 대응 상황 파악 등 • **필요시 긴급조치사항 지시**(환자 발생 확산 방지 대책 강구)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점검** • **긴급조치사항 지시** (질병관리본부장)	**위기경보 발령** • **발생현황 확인 및 위기경보 발령**(장관) **조치사항 지시** •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현장 대응 상황 파악 등 • **필요시 긴급조치사항 지시**(환자 발생 확산 방지 대책 강구)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점검** • **운영에 따른 긴급조치사항 지시**(질병관리본부장)	**위기평가 확인** - 위기평가 확인 및 위기 단계 격상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 대처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 **필요시 긴급조치사항 지시**(범정부 협조체계 확립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점검** • **운영에 따른 긴급조치사항 지시**(보건복지부장관)	• 위기평가 확인 및 위기 단계 격상 결정 • 위기경보 발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 대처상황 점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조 총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수습 사전 협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수습 협력 당부	• **위기경보 단계 하향** •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총괄**
담당 실·국·센터장		• **위기평가회의 주재** (의장:긴급상황센터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위기평가회의 주재**(의장:긴급상황센터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위기평가회의 주재**(의장:긴급상황센터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위기평가회의 주재**(의장::긴급상황센터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 계획 수립 • 감염병 발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대변인 (위기소통 담당관)		• **보도자료 기획·배포, 언론 대응** • **콘텐츠 및 국민소통 채널 관리**	• **언론브리핑 및 취재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언론/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민원소통 강화, 국민소통 채널활용 대응콘텐츠 확산**	• **언론브리핑 및 취재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언론/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민원소통 강화, 민관채널 협력 위기극복콘텐츠 확산**	• **언론브리핑 및 취재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언론/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민원소통 강화, 민관채널 협력 위기극복콘텐츠 확산**	• **위기소통 평가 및 매뉴얼 보완**

유관부서

질병관리본부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총괄팀)** : 방역 기획·총괄 및 대외협력 등
- **위기분석국제협력과(총괄팀)** : 국내외 정보수집·위기평가 및 국제협력
- **질환별 담당과(총괄팀)** : 관리지침 총괄 / 조치결정 등
- **중앙역학조사반(역학조사팀)** :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등
- **검역지원과(검역관리팀)** : 입국자 검역 및 여행객 예방·홍보
- **위기소통담당관(언론대응팀)** : 브리핑, 취재지원, 국민소통, 콜센터 운영 등
- **감염병진단관리과(검사팀)** : 진단검사체계 총괄 등
- **국립보건연구원 질환별 담당과(검사팀)** : 진단법 확립, 진단시약 등
- **자원관리과(의료자원관리팀)** : 감염병관리기관(격리병원) 및 비축물자 관리 등
- **예방접종관리과(의료자원관리팀)** : 백신접종관리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정책관(총괄반)** : 상황 총괄 관리, 심의.자문기구 운영,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관리 등
- **보건의료정책관(자원관리반)** : 의료자원 확보 및 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 방역조치 관리 총괄
- **대변인실(홍보관리반)** : 보도자료, 언론브리핑 총괄, 오보대응 등
- **비상안전기획관(대외협력반)** : 대외협력 총괄,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파견인력 관리
- **정책기획관(행정지원반)** : 행정지원 총괄,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 대응, 예산확보, 장차관 지시사항 관리

3. 감염병 대응 주요 협업기능

기 능	① 재난상황 관리	⑥ 재난자원 지원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주관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질환별 담당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및 질환별 담당과
(연계 부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행정안전부 등)	(식약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주요 업무	< 평시 >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관리 ·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감시 · 국가방역인프라 (인력,시설, 장비) 구축 및 점검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 · 위기평가회의 운영 및 위기경보 발령, 상황 전파 · 재난상황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보고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필요시 관계부처 공무원 파견 요청 ·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요청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요청	· 격리 병상, 지정 의료기관 등의 시설 확보 · 역학조사관, 민간전문가 등 필요 인력 확보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확보 · 필요 예산 확보 및 지원 · 필요시 감염환자 및 자가격리자 소재 파악 및 관리 등 행정 지원	· 국가 감염병대응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조치 강화 · 감염환자 및 격리대상자 조치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 외래 및 입원진료체계 강화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감염환자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기 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⑪ 사회질서 유지	⑬ 재난수습 홍보
주관 부서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및 질환별 담당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및 질환별 담당과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연계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	· 감염병 발생 환경 소독·제독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해상질서유지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보도자료 검토·배포, 취재지원, 오보대응, 현장소통 지원 · 위기소통 콘텐츠 관리·배포, 정부·민간 기관 소통 협조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SNS 등 디지털 직접소통 · 감염병전문 콜센터 1339 대응가이드 및 인력·회선 관리 · 언론,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학교·학원, 직장·사업장, 수용·보호시설, 해외여행객, 재외국민,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군 인력·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4.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 처	주 요 임 무			
	[관심] 질환별 대책반 운영 단계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단계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심각] 범정부적 총력 대응 단계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지속 ·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지속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시설, 장비, 인력)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강화 지속 · 대국민 홍보강화 및 위기소통 강화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 대응반 구성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대응반 운영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대응반 운영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상황 점검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후속 대응반 운영
대통령비서실	· 재난상황 초기 상황 파악,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및 후속 대응·복구
국무조정실	· 동향 모니터링, 정부대처방향 검토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대응 업무 협의 · 조정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대응 업무 협의 · 조정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대응 업무 협의 · 조정
행정안전부	· 지역별 동향파악 및 분석 · 보고 · 전파	· 지역별 동향파악 및 분석 · 보고 · 전파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중대본부장)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소방청	· 이송체계 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 이송·방역 지원 및 관련 상황 정보 전파	· 이송·방역 지원 및 관련 상황 정보 전파	· 이송·방역 지원 및 관련 상황 정보 전파
해양경찰청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이송체계 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상질서 유지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상질서 유지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지원, 감염병 환자 이송 정보 주관기관 신속 전파, 해상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감시·예찰 · 검역·검사 활동 등	· 국내·외 가축질병 발생동향 감시·예찰 강화 · 검역·검사 활동 등 · 필요시 가축방역협의회 통해 위험 수준 평가	· 가축방역활동 강화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속 ·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환경부	· 주요 감염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및 예찰활동 · 필요시 감염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개체군 조사, 역학조사 등 실시	· 감염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와 개체군 조사 · 감염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 주요 감염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 환자·접촉자 폐기물 처리 관리	· 감염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 환자·접촉자 폐기물 처리 관리	· 감염 야생동물 이동 경로·확산속도 검토를 통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대응 관리 · 환자·접촉자 폐기물 처리 관리
외교부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재외국민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재외국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해외 현지 조사 필요시 해당국 협조 요청 · 외국인 접촉자 등 추적조사자 정보 제공 협조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 해외 현지 조사 필요시 해당국 협조 요청 · 외국인 접촉자 등 추적조사자 정보 제공 협조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 · 해외 현지 조사 필요시 해당국 협조 요청 · 외국인 접촉자 등 추적조사자 정보 제공 협조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 및 시설지원 준비태세 점검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휴교 결정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대책 마련)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휴교 결정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대책 마련)
법무부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국토교통부	· 항공, 철도, 버스 등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항공, 철도, 버스 등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자 조사 협조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등 ·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자 조사 협조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제한 ·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자 조사 협조
해양수산부	· 선박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선박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및 홍보 지원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계속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산업보건유관 단체와 관련 정보 공유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준비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감염병 예방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식품의약품 안전처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방안 검토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 독려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경찰청	· 필요시 인력지원 및 정보 제공 협조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위 내 인력지원 · 환자, 접촉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 환자, 접촉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 환자, 접촉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병무청	· 병역의무자에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일부 중지 검토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전면 중지 검토
지자체	· 지역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프라 정비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 이송, 격리자 관리, 접촉자 파악 지원, 주민대상교육 등)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 이송, 격리자 관리, 접촉자 파악 지원, 주민대상교육 등)	· 지역 모든 방역 인프라 파악 및 동원 등

5. 비상연락망

□ 보건복지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공공보건정책관	국장	044-202-2500
질병정책과	과장	044-202-2510
질병정책과	사무관	044-202-2508
질병정책과	주무관	044-202-2507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	043-719-9000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과장	043-719-9050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사무관	043-719-9061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주무관	043-719-9054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043-719-7789, 7790

□ 감염병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02-770-4887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02-770-7764	02-770-4740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044-200-2293 044-200-2294	044-200-2318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건재난대응과	044-205-1541 044-205-6158	044-205-8890 044-205-8947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3	044-205-8711
해양경찰청	외사과	044-205-2368	044-205-899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044-868-046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0	044-201-7261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해외안전지킴센터	02-2100-8204 02-2100-8566	02-2100-7995 02-2100-7966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02-748-665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044-203-6438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02-2110-3012	02-2110-031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8	044-200-5869
	항만운영과	044-200-5780	044-200-578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4	044-202-809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	044-203-472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640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042-481-2660 042-481-2871	042-481-2670 042-481-2860

□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담당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02)2133-7692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051)888-3356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	053)803-6281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032)440-2787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062)613-3361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042)270-4852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62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031)8008-5430
강원도	보건정책과	033)249-2434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3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2643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4692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41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8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2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37,293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044)300-5723

□ 산하기관·단체

기관명	연락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6
국립부산검역소	051)602-0620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2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51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국립마산검역소	055)981-5322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국립통영검역소	055)645-3579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4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2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15
대한의사협회	02)6350-6537
대한병원협회	02)705-9200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한국방역협회	02)467-7630

Ⅶ. 부록

1. 사례

□ 2015, 2018 메르스 국내 유입 사례

구 분	2015년	2018년
기 간	'15.5.20.~12.23.(217일)	'18.9.8.~ 10.16(38일)
위기경보	주의	주의
환자 수	186명	1명
사망자 수	38명 (치명률 20.4%)	0명
격리자 수(누계)	16,693명	21명

□ 메르스(2015) 대응시 문제점 및 개선 결과

개편 前		개편 後
·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미흡 · 감염병 국제 네트워크 미흡		· **위기분석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 **WPRO 고용휴직직위** 신설 및 **역학조사관** 파견
· 오염국가 구분없는 문자서비스 ·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 · 입국 검역 시 본인진술 외의 정보파악 곤란 · 인천공항검역소에 비음압격리관찰실(21개)	1 유입 차단 및 초기 대응	· 오염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문자서비스** 제공 · 위험국가 입국자 **1:1 전수 게이트검역** · 위험국가 방문자를 입국 후 잠복기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구축 · 인천공항검역소에 **음압격리관찰실** 확충(50개) 및 **BL3 검사실** 설치
· 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 상황 발생 후 대책본부 구성 · 현장초동조치 시스템 미흡		·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보(중앙 30명, 지자체 34명) · **방역직류** 신설 · 24시간 365일 **긴급상황실** 운영 · 현장을 즉시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구성

·진단검사 지연(NIH 1개 기관)	② 유행 확산 시 총력 동원	·**진단검사 신속**시행(1일 이내, 18개 기관) ·표준화된 **진단검사 통합지침** 배포 ·**진단·치료제 긴급도입** 제도화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부재 ·개별 시스템 운영으로 분절적 대응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감염병별 감시·역학조사·환자관리 등 **통합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음압병상 부족 ·감염병 전문치료기관 부족 ·위기 발생 후 산발적인 자원 비축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검체자원화**를 통한 연구기반 마련
·감염병 위기 시 중앙-지방 간 역할 불명확에 따른 혼선 ·병원명 공개 지연으로 국민 불신	③ 거버넌스 개편	·질본 **차관급** 격상 및 **조직·인력 확충**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확충(시도 16명, 보환연 67명, 보건소 283명)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감염병 확산 시 **정보공개** 법령 마련
·과밀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④ 병원 감염 방지 의료 환경 개선	·**응급실** 감염병 환자 **선별진료** 및 **격리병상** 확충 ·응급실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및 명부관리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제한**
·6인실 위주 입원실 ·가족·사적간병 문화		·**4인실** 위주 입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미흡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및 인력요건 강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인증평가**에 감염관리영역 강화 ·감염방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병원쇼핑, 병문안 등 문화적 특성이 감염 확산		·**병문안 권고문** 마련 ·상급병원 지정 시 **의뢰·회송체계 및 병문안 개선체계 의무화**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문자 전송시스템(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요청

□ 재난문자 표준문안(「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 2)

감염병 재난	[보건복지부] 오늘 감염병 'OO'단계 발령. 손씻기,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고, 'OO대응요령'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시 최대 60자(2G)/90자*(4G, '18.12월부터 적용)

* 국제표준에 따라, 4G는 한글·영어·공백·특수문자 모두 2Byte(총 180byte)

○ **(송출지역단위)** 시·군·구, 시·도, 전국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 발송 절차 >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송출절차(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부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 요청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이통사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CBS) 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 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해당 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최대 90자 문자 전송

⬇

국민(휴대폰 가입자)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외부망, 인터넷망) : https://cbis.safekorea.go.kr

□ 송출절차(시·도 및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도(재난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 요청

⬇

시·도(재난상황실)

이통사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재난관리시스템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 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해당 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최대 90자 문자 전송

⬇

국민(휴대폰 가입자)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 재난관리시스템(업무망) : https://www.ndms.go.kr

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

□ 개 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 시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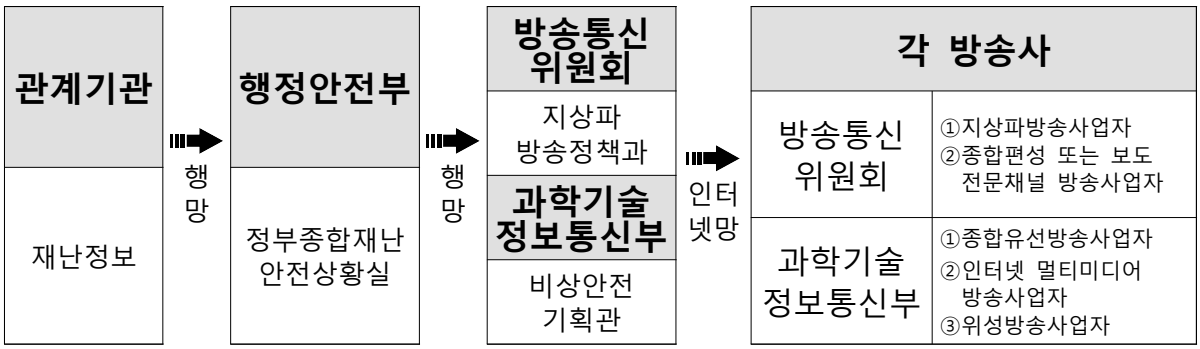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 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발송절차

소관 부처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지원 요청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방송 요청 검토 및 통보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각 방송사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자막방송 송출

⬇

국민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신속하게 송출

3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경보

□ 목 적

○ 민방공 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체계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 전파(민방위기본법 제33조)

□ 주요기능

○ 중앙과 17개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국 경보단말(사이렌 2,220대) 울림

○ 8개 중앙방송사 및 18개 정부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활용한 상황 전파

○ CBS(재난문자), DMB(지상파방송), TV자막 시스템과 연계 알림

※ 재난경보(재난경계, 재난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단말만 이용하여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실시

□ 민방위경보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 전달체계도

소관 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재난경보 발령 검토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 발령
  ※ 재난경보: 재난경계, 재난위험, 재난경보 해제
  - 전국단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단위 재난: 시·도지사(2개 시·군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중앙 및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경보 발령 요청 및
경보 전파 실시

※ 요청내용: 경보 발령사유, 경보의 종류, 울림일시, 울림지역, 경보요청자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민방위경보
  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 행정안전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경보통제소에 화상전화로 경보 발령 지시
    ※ 제1경보통제소 부재시 제2경보통제소 요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 전용전화로
    요청, 부득이한 경우 FAX 사용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장애 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 요청

⬇

지자체 민방위경보 단말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경보종류에 따라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 재난위험경보: 음성방송+사이렌

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 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 정보와 대응 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 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18. 10월말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85**	36	245	17	87
사용자수	**16,157**	1,522	11,403	2,354	878

□ 시스템 개념도

□ 메시지 작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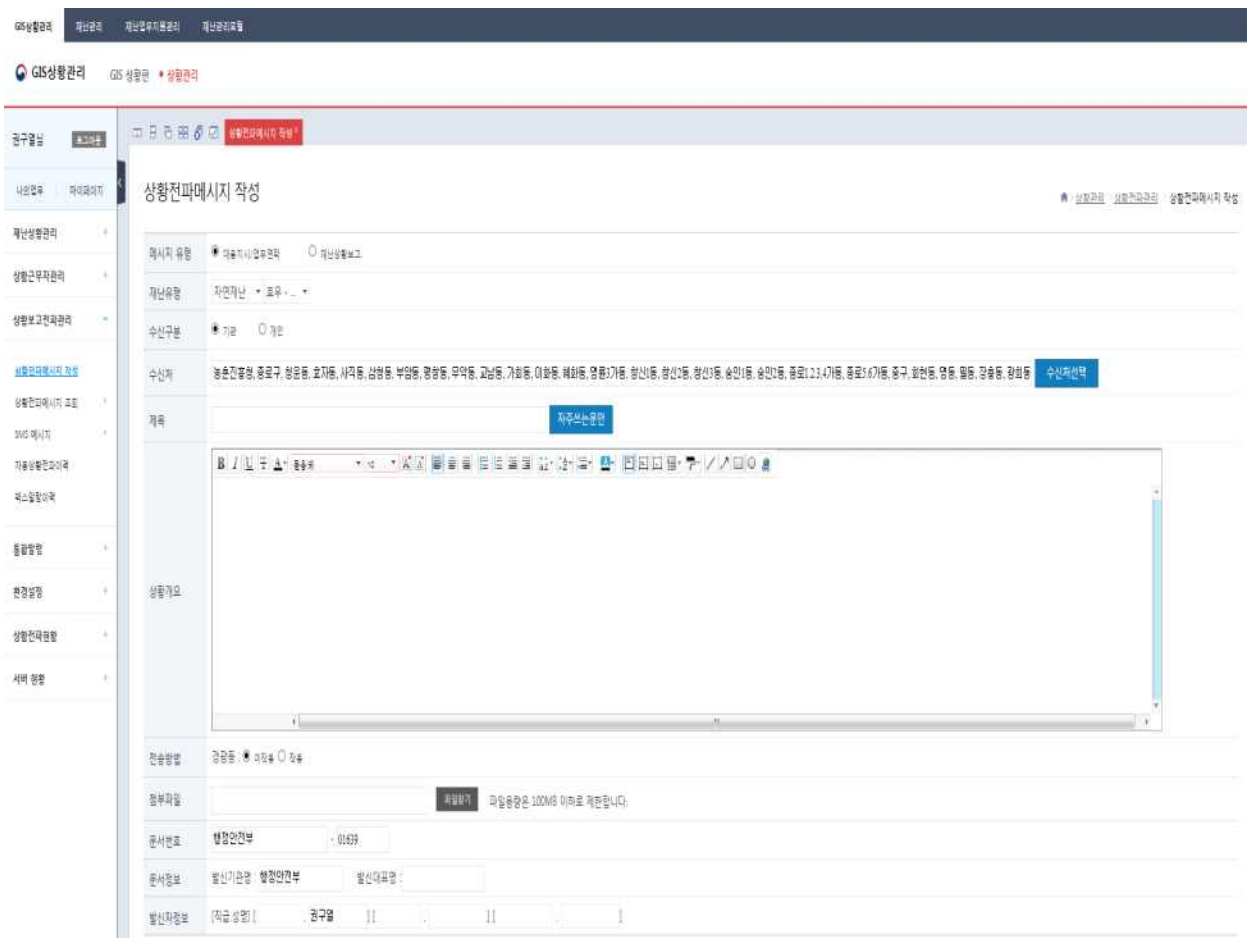

※ 경로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GIS상황관리-상황관리-상황보고전파관리-상황전파메시지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ndms.go.kr, 외부망(인터넷망)], 문의(044-205-8462)

3.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개 요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부처,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18부 •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 영상회의 운영

※ 운영사례: 태풍 "솔릭" 대처 긴급점검회의(VIP주재, '18.8.23.) 등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상황 초기단계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단계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 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운영 절차

소관 부처

영상회의 연계 요청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

참여기관 영상회의

상황 공유 및 논의

- 회의계획 수립(참여기관 선정) 및 영상회의연계 요청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유선 연락*하여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요청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연재난팀원(044-205-1543)
- 재난발생현황, 대비태세, 협력지원체계, 대응조치 등 점검을 통한 총괄·조정

4.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기본 원칙

○ 신속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일관성: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 ○ 피해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 언론사 현황 및 기자 명단 확보 ○ 타 부처 위기상황 전파 등 협업가능 SNS 매체 파악
		○ 온·오프라인 위기징후 파악 및 상황 분석 ○ 위기 유형과 단계별 전파가 필요한 콘텐츠 점검과 준비 ○ 피해발생 예상 시 예방요령 온라인 홍보 전개
위기(crisis)	위기발생	○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 위기 비상체제 가동 여부 결정 -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본부 설치 여부 결정 - 응급임무 부여/ 비상근무 개시

위기단계		점검사항
		○ 여론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현황 점검 – 온라인 여론동향 파악 및 SNS 대응현황 점검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 위기 언론대응 – 기자 연락 –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 보도자료 배포 및 재난보도준칙 공유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 재난안전 전문가 풀(pool) 공유 등
		○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 SNS 활용 위기상황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전파 – 공식 브리핑자료 활용
		○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위기 후 (post-crisis)		○ 결과 브리핑 – 온·오프라인 전파·확산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온·오프라인 여론 분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 회복 프로그램 – 상황 관리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세부내용 전파 – 내부 조직원 결속 프로그램 가동 – 대외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 세부사항 전파 – 언론사 및 주요 관계자에게 감사서신 발송 – SNS 활용 재발방지 약속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각 대변인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며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둠

○ 대변인 지위와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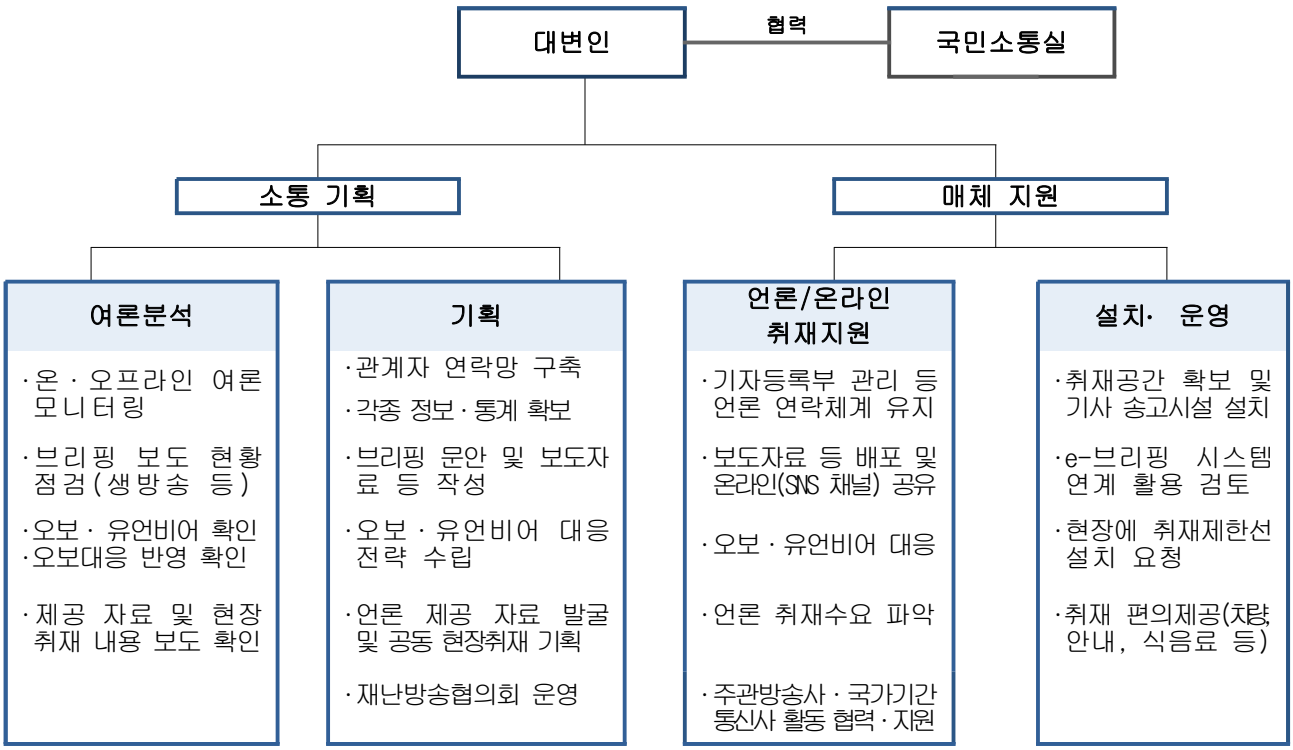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보유매체 활용 및 범부처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지원,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 취재제한선 조율 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몇 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재난현장 관할 지자체(시·군·구) 홍보담당자를 반드시 포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핫라인을 통한다.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거짓 정보 등을 초기에 발견·정리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해명하여 소멸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자료 배포)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언론에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의 대응상황과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브리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어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에도 해명 글을 게재하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한다.

○ 특히 실시간 파급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와 동영상 형태의 행동요령 콘텐츠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이재민 임시구호소 등에도 취재제한선을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들은 취재기자 리스트에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소)

o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o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o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기능)

o 수시 상황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o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o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o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o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o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탬플릿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깃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 - 인구통계적 특성 - 피해규모(정도)	- 진행상황/사실 전달 - 집회/연설 등 - 현재 상황 설명 - 루머대응 - 미디어 응대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 –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 –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 –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 –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 –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 사과 및 책임감 표현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 관계 개선 노력 – 이미지 개선 노력	○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 –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 –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 – 참여형 소통 방안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책임인 경우	○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 –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 –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 –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 분석 필요	○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상황 전달체계

□ 개요

○ 감염병의 경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WHO** 및 **회원국**에 발생 보고하고 있음

○ 각국의 **IHR 연락관***은 **자국**에서 **발생**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개요** 및 이에 대응하여 시행한 **보건조치**에 대해 신고해야 함

*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위기분석국제협력과)에서 담당

** 환자 수와 사망자수, 검사결과,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조건 등

○ 또한, **외국인 확진환자**(사망) 및 **확진환자의 외국인 접촉자**에 대해서도 해당국가 **IHR 연락관**과 **해당국가가 소속된 WHO 지역사무처 및 외교부에서 제공한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에 이메일로 보고

□ 상황 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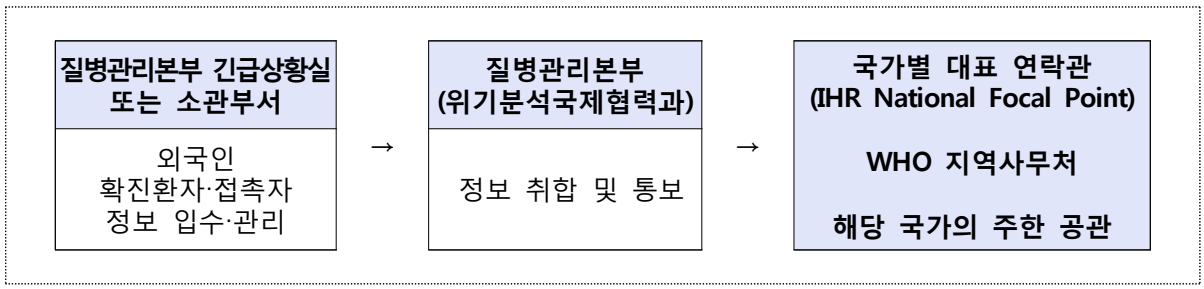

○ **(긴급상황실 또는 소관부서)** 감염환자·접촉자 정보 입수·관리

○ **(질본 위기분석국제협력과)** IHR 통보할 정보* 취합 및 통보

* 통보 내용 : 여권상의 이름, 성별, 연령, 여권번호, 국적, 확진일, 증상발현일, 확진검사 기관, 검사·검체 종류, 이용 항공편, 좌석번호, 조치 내용, 출국 여부 등

6.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함

-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

□ 수습지원단 표준편제

□ 임　　무

○ 지역대책본부장 등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및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현장 상황 및 재난발생 원인 분석 보고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한 보고 등

7. 국민행동요령

□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 올바른 손씻기 예방수칙 (국문)

□ 올바른 손씻기 예방수칙 (영문)

□ 수인성 감염병 예방수칙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수칙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예방 가능합니다.
1
올바른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
음식조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2
끓인 물 마시기
물은
끓인 후
마시기
3
익혀먹기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기
4
깨끗이 씻어
벗겨먹기
채소 ·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5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 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 도구는 분리(생선용,
채소용, 고기용)하여
사용하기
질병관리본부
1339

□ 기침 예절 (국문)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옷 소매로 가리기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발행일 2018.3.21

□ 기침 예절 (영문)

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1339
KCDC Call Center
Cover your nose and mouth with your sleeve when coughing!
[The Proper Cough Etiquette]
1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a tissue when you cough
2
Cover your mouth and nose with your sleeve if you don't have a tissue
3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at least 30 seconds after coughing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at least 30 seconds!
[The 6 Steps of Proper Hand Washing]
1 PALMS
2 BACKS OF THE HANDS
3 BETWEEN THE FINGERS
4 FINGERS INTERLOCKED
5 THUMBS
6 UNDER THE NAILS
2018. 05. 15

□ 메르스 예방수칙 (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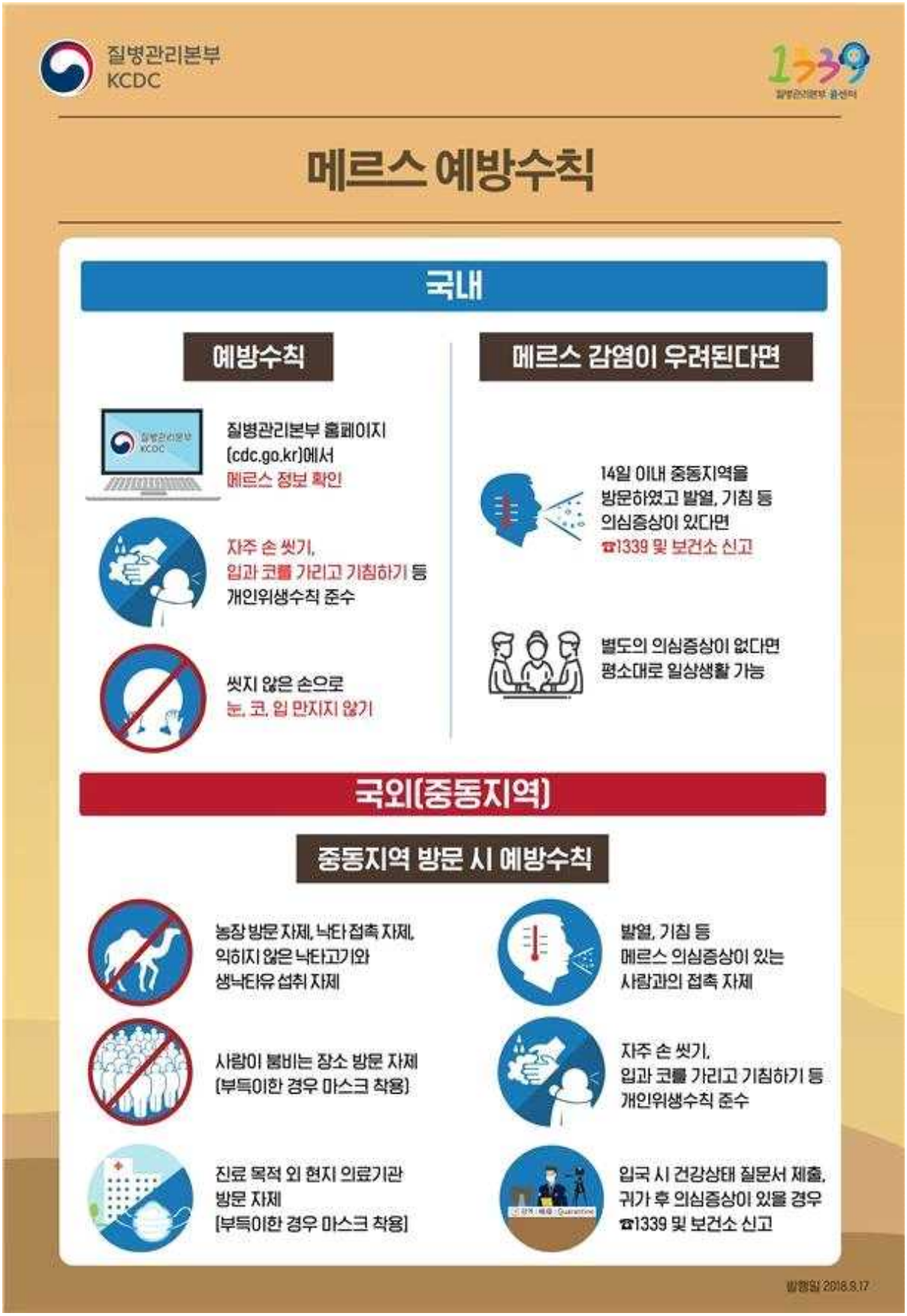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메르스 예방수칙
국내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cdc.go.kr)에서
메르스 정보 확인
자주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메르스 감염이 우려된다면
14일 이내 중동지역을
방문하였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1339 및 보건소 신고
별도의 의심증상이 없다면
평소대로 일상생활 가능
국외(중동지역)
중동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농장 방문 자제, 낙타 접촉 자제,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자제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진료 목적 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자제
자주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귀가 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및 보건소 신고
발행일 2018.9.17

□ 메르스 예방수칙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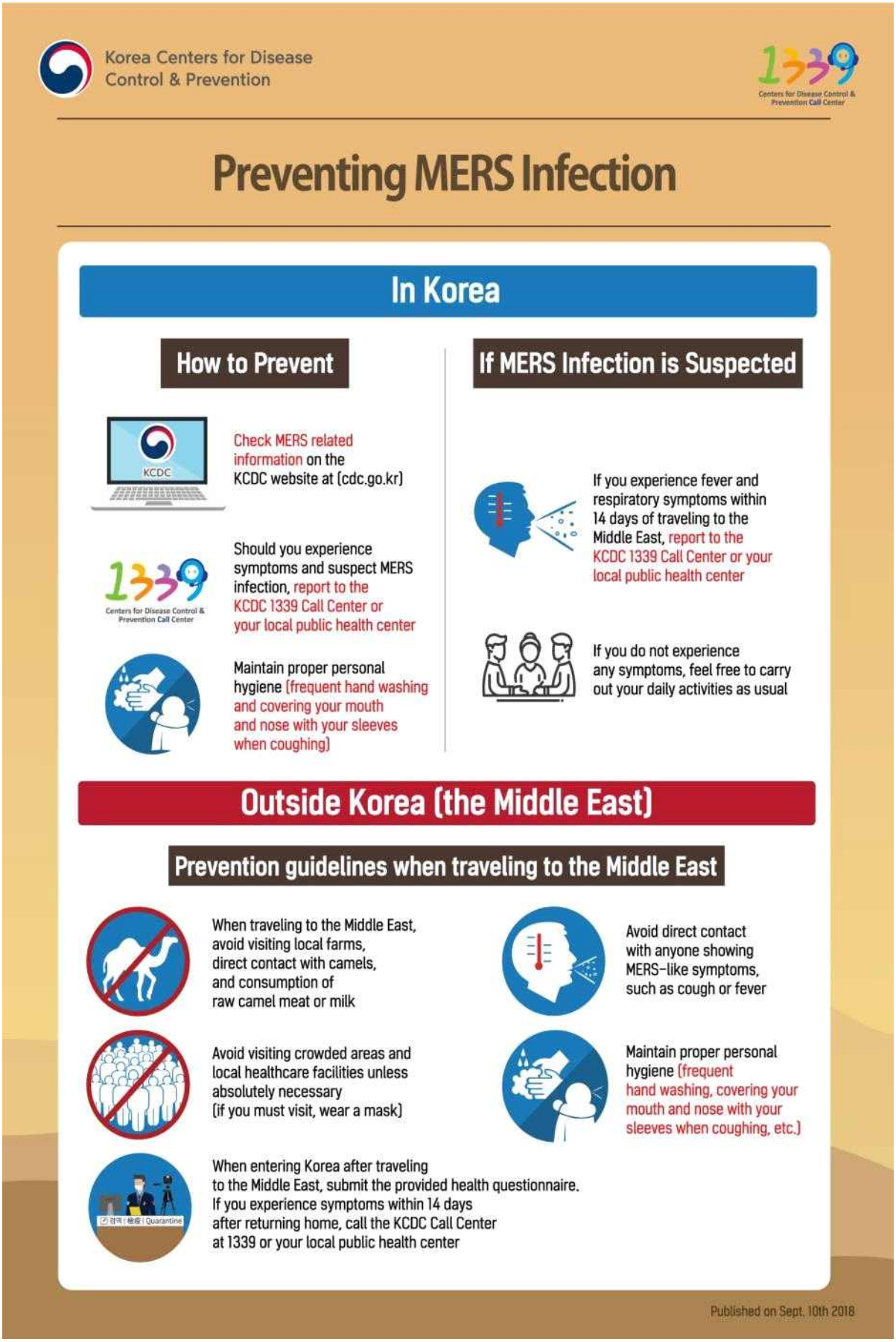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133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all Center
Preventing MERS Infection
In Korea
How to Prevent
KCDC
Check MERS related information on the KCDC website at (cdc.go.kr)
133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all Center
Should you experience symptoms and suspect MERS infection, report to the KCDC 1339 Call Center or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Maintain proper personal hygiene (frequent hand washing and covering your mouth and nose with your sleeves when coughing)
If MERS Infection is Suspected
If you experience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within 14 days of traveling to the Middle East, report to the KCDC 1339 Call Center or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If you do not experience any symptoms, feel free to carry out your daily activities as usual
Outside Korea (the Middle East)
Prevention guidelines when traveling to the Middle East
When traveling to the Middle East, avoid visiting local farms, direct contact with camels, and consumption of raw camel meat or milk
Avoid direct contact with anyone showing MERS-like symptoms, such as cough or fever
Avoid visiting crowded areas and local healthcare facilities unless absolutely necessary (if you must visit, wear a mask)
Maintain proper personal hygiene (frequent hand washing, covering your mouth and nose with your sleeves when coughing, etc.)
검역 | 檢疫 | Quarantine
When entering Korea after traveling to the Middle East, submit the provided health questionnaire. If you experience symptoms within 14 days after returning home, call the KCDC Call Center at 1339 or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Published on Sept. 10th 2018

8. 감염병 위기 시의 주요 표준운영절차

□ 감염병 위기시 부처간 표준업무절차

부처	조치사항
행정안전부	• **주관부처 요청시 정부합동 일일점검회의 개최** ※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안건) 주관부처 대응 및 지자체 접촉자 관리상황 추진실적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참여부처) 복지부, 질본, 지자체,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등 (안건에 따라 참여부처 변경 가능)
	• **내국인 접촉자 주소정보 제공 협조** * 접촉자 주민등록 전산자료조회
	• **지자체 접촉자 관리 모니터링 지원**
	• 감염병 재난 국민행동요령 전파 협조
법무부	•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 외국인 연락처 및 체류지 정보 제공
경찰청	• **내외국인 접촉자 소재파악**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 **확진자 위치정보(GPS) 제공(통신사)**
외교부	• **외국인접촉자 소재파악 등 정보 확인 및 누락정보 제공**
	• **국민 보호 조치**
	• 감염추정 국가내 현지 접촉자 정보 확인
	• 필요시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보건부 협조 요청
	• **메르스 안전문자 특별발송**
환경부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 관리** - 유관기관 안내 및 모니터링 * '18년 발생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종합상황실, 유역 (지방)환경청 지역상황실 운영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국토부	• 항공, 철도, 버스 관련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지원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 카드사용내역정보제공 -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명세 및 교통카드 정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 접촉자 DUR 등록 및 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소방청	• 의심 및 확진환자 이송 지원

□ 감염병 위기소통 대응조치

① 관심단계

대응 조치	프로그램
보도 기획	○ 언론보도 기획 - 위기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위기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 • 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취재 지원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 • 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 • 설명자료 배포
소통 기획	○ 콘텐츠 관리 - 상황,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 • 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배포 - 유관기관 소통 협조 리스트 확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 추가 확보 ○ 소통자문단 상황 공유 - 상황 및 대응에 대한 상시 정보 공유, 자문단 의견 수렴 ○ 1339 대응 가이드 - 위험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가이드(FAQ마련)
온라인 소통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 홈페이지 메인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 내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관리(배너, 링크, 자료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② 주의단계

대응 조치	프로그램
보도 기획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위기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위기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 • 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취재 지원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 • 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 • 설명자료 배포 ○ 브리핑 - 브리핑 기획(일정, 장소, 사전 공지, 기자인솔, 배포자료 등) - 상황, 입장,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 자료 검토 ○ 현장 소통 지원 - 현장 정보 및 상황 공유, 현장 취재지원, 지역사회(보건소 등) 협조 등
소통 기획	○ 콘텐츠 관리 - 예방법, 환자발생, 대응상황, 루머대응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 • 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 통한 콘텐츠 배포 ○ 정부 • 민간 기관 소통 협조 - 정부 • 민간 기관 협조를 통한 국민소통범위 확대(정부, 지자체, 협회, 언론, 포털 등) ○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 체계 - 소통자문단과 언제든 소통 이뤄 질 수 있도록 상시 정보 공유 및 자문 체계 유지 ○ 1339 인력 • 회선 추가 확보 - 상담 증가 추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인력 • 회선을 추가 확보 ○ 국민 인식조사 -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국민인식 확인
온라인 소통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 구성 - 위기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위험 상황 관련 모든 자료 취합(상황 정보, 보도자료, 소통콘텐츠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③ 경계-심각단계

대응 조치	프로그램
보도 기획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위기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위기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 • 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취재 지원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 • 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 • 설명자료 배포 ○ 상시 브리핑 체계 - 상시 브리핑 체계 구축 및 상주 기자 지원 - 상황, 입장,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 자료 검토 ○ 현장 소통 지원 - 현장 정보 및 상황 공유, 현장 취재지원, 지역사회(보건소 등) 협조 등
소통 기획	○ 콘텐츠 관리 - 예방법, 환자발생, 대응상황, 루머대응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 • 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 통한 콘텐츠 배포 ○ 정부 • 민간 기관 소통 협조 - 정부 • 민간 기관 협조를 통한 국민소통 범위 확대(정부, 지자체, 협회, 언론, 포털 등) ○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 체계 - 소통자문단과 언제든 소통 이뤄 질 수 있도록 상시 정보 공유 및 자문 체계 유지 ○ 매체광고 집행 - 대국민 대상 메스미디어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광고 집행
온라인 소통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위기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위험 상황 관련 모든 자료 취합(상황 정보, 보도자료, 소통콘텐츠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9. 지역방역대책반 체계도

□ 시 · 도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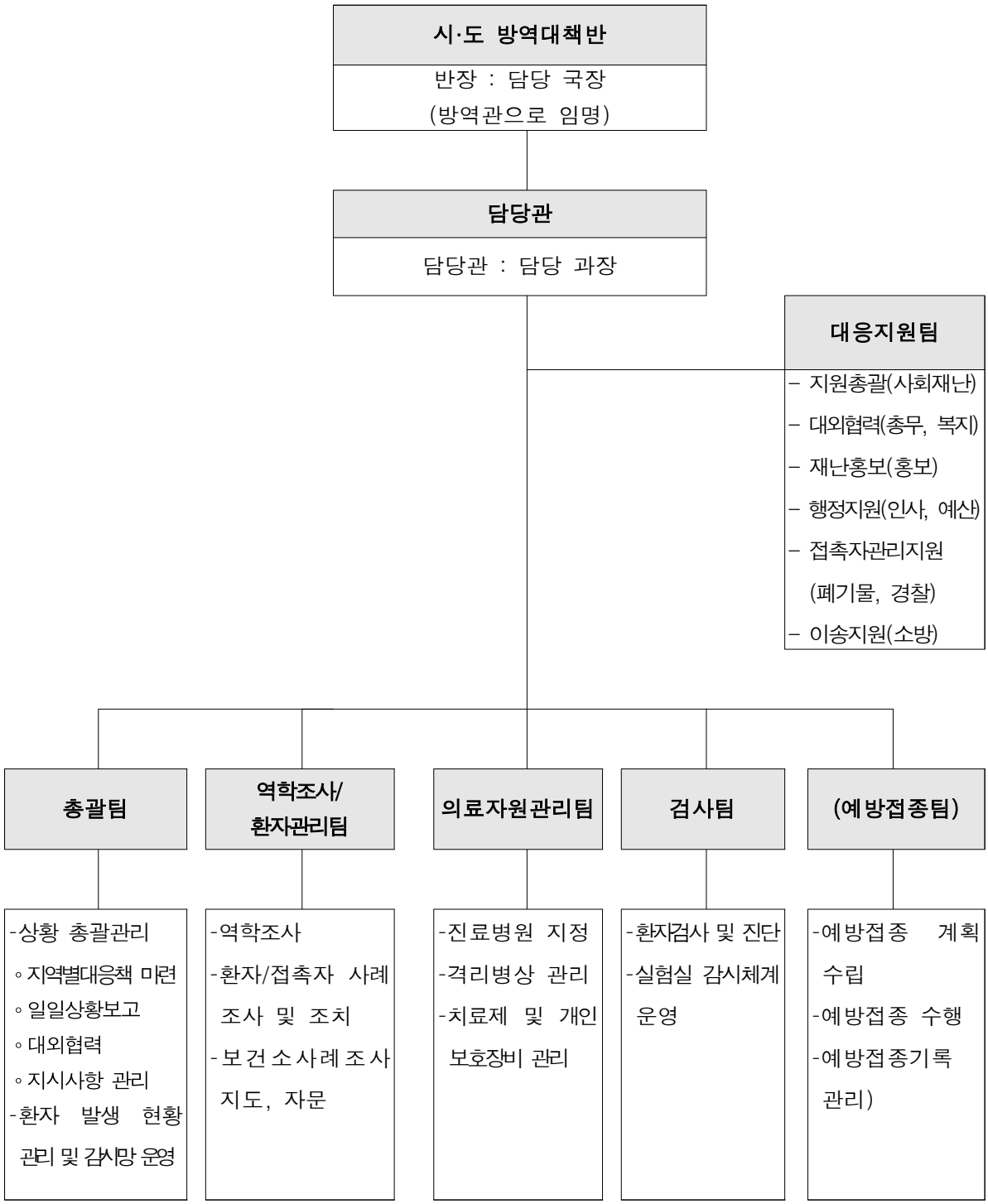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 · 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시·군·구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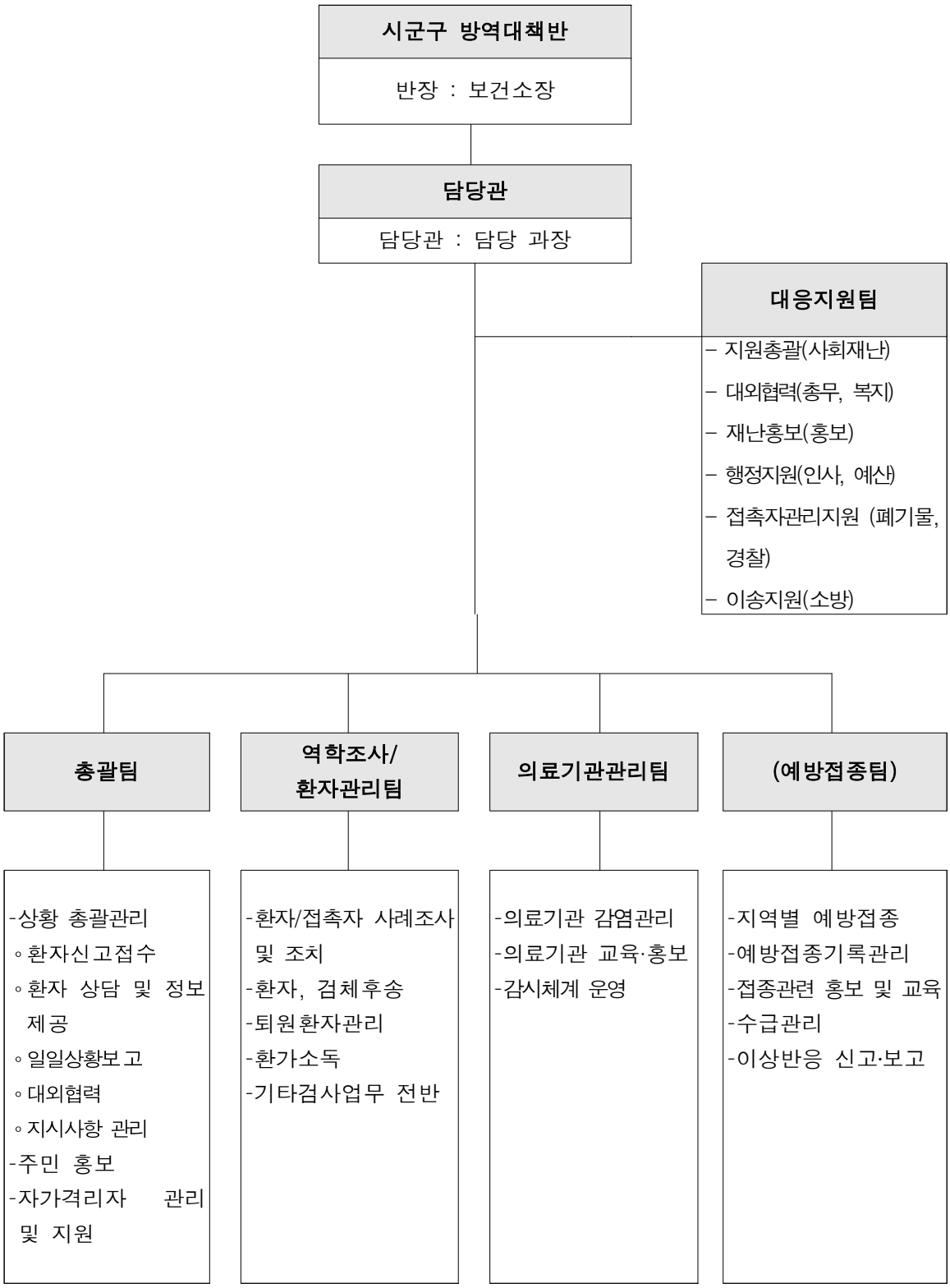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소관 부서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TEL : 044)202-2508, 2507 FAX : 044)202-3928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TEL : 043)719-9054 FAX : 043)719-9099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